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기도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023-001

스톱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경기도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스토킹·
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경기도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CONTENTS

04

1. 스톡·데이트폭력 바로 알기

1. 스톡 개념 및 유형	06
1) 스톡의 정의	06
2) 스톡 피해 체크리스트	07
3) 스톡 행위의 유형	09
4) 스톡 관련 법률	12
2. 데이트폭력 개념 및 유형	15
1) 데이트폭력의 정의	15
2) 데이트폭력 피해 체크리스트	16
3) 데이트폭력의 유형	19
4)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	22
3. 스톡·데이트폭력에 관한 참과 거짓	23
1) 스톡·데이트폭력 발생 원인	23
2) 스톡·데이트폭력 현황	25
3) 스톡·데이트폭력 관련 잘못된 통념과 사실	28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경기도 스톡·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32

2. 피해자 지원 길잡이

1. 스톡·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34
1)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34
2) 스톡·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36
2. 접수 및 상담	40
1) 피해접수	40
2) 초기상담	45
3) 지원계획 수립	52
4) 안전계획	54
5) 평가 및 종결	59
3. 서비스 지원	60
1) 수사 및 법률 지원	60
2) 의료 및 전문상담 지원	76
3) 주거 및 경제적 지원	80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타 지원	84
4. 상담가·조력자로서의 자세	86
1) 전문적 인식과 사명감 갖기	86
2) 상담가 안전 지키기	89

88

부록1. 유관기관 90

1. 경기도 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92
2. 경기 남·북부 경찰청 및 경찰서	101
3. 전국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103
4. 외국인 지원 연계기관	109

부록2. 활용서식 112

1. 접수 및 상담	114
2. 서비스 지원	121

부록3. 스톡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128

1. 스톡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0
2. 스톡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7
3. 경기도 스톡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141
4.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142

참고문헌 144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1

스토킹· 데이트폭력 바로 알기

1. 스토킹 개념 및 유형
2. 데이트폭력 개념 및 유형
3.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참과 거짓

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1

스토킹 개념 및 유형

1. 스톱킹의 정의

스토킹 행위란?

- ① 따라다니기
- ②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③ 원치 않는 전화, 메일, 메시지, 사진 등 보내기
- ④ 원치 않는 물건 등 보내기
- ⑤ 주거, 직장, 학교 등 상대방 주변의 사물 훼손
- ⑥ 상대방 개인정보 온라인에 공유·배포
- ⑦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인 척하기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이면 “스토킹 범죄”

◎ 스톱킹 행위

- 스톱킹 행위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동거하는 사람 및 가족에 대하여 3) 정당한 이유 없이 4) 특정한 행위를 하여 5)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
-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4) 특정한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법적 정의〉

- ①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방해한다.
- ② 집, 직장, 학교 등 상대방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다.
- ③ 원치 않는 전화, 문자, 메일, SNS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보낸다.
- ④ 선물, 꽃, 물건 등을 보내거나 상대방 주변에 둔다.
- ⑤ 현관문을 부수거나 차에 흠집을 내는 등 상대방 주변의 사물을 훼손한다.
- ⑥ 상대방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 ⑦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인 척 한다.

◎ 스톱킹 범죄

- 스톱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구분되며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스톱킹 피해 체크리스트

나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아래의 행위로 인해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스톱킹 행위 또는 범죄 피해에 해당합니다.

- 아래의 문항 중 ① ~ ⑨번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합니다.
- ① ~ ⑨번 문항 중 1개 이상의 행위를 여러 번 또는 장시간 경험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합니다.
- ⑩ ~ ⑬번 문항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다면,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및 경찰의 개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행위가 아니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 또는 괴롭힘 등이 있거나 이로 인해 불안·공포 혹은 위협을 느낀다면,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체크리스트¹⁾

1	집·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 찾아오거나 주변에서 기다린다.	☐
2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다.	☐
3	현관문, 초인종 등을 부수거나 차에 흠집을 내거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는 등 내 주변의 사물을 훼손한다.	☐
4	원치 않는 선물, 꽃, 메모, 음식, 물건 등을 보내거나 내 주변에 두고 간다.	☐

1)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2). 「데이트(교제)폭력·스토킹 범죄 피해 대응 안내」;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해설서」 참조하여 구성.

5 원치 않는 전화, 문자, 메일, SNS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낸다.

☐

6 나의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

7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

8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나인 척하거나 내가 곤경에 빠지는 상황을 만든다.

☐

9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

☐

10 위와 같은 행위의 강도 또는 빈도가 점점 심각해진다.

☐

11 나 또는 내 지인, 반려동물 등을 협박하거나 흥기로 위협한 적이 있다.

☐

12 나 또는 내 지인, 반려동물 등에게 범죄(성폭력, 폭행, 상해, 감금, 납치 등)를 저지르거나 시도한다.

☐

13 스토킹 신고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받은 후에도 나에게 접근·연락한다.

☐

3. 스토킹 행위의 유형

- 물리적 스토킹: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사물 등 훼손하기
- 매체를 이용한 스토킹: 원치 않는 전화, 문자, 메일, 사진, 물건, 영상, SNS 메시지 보내기
- 온라인 스토킹: 개인정보 공유, 게시, 사칭

① 물리적 스토킹: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사물 등 훼손하기 등

A씨는 같은 직장에서 2년간 교제했던 피해자가 퇴사를 하면서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계일보 23.07.12)

A씨는 패키지 여행에서 알게 되어 여행지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이후 3일에 걸쳐 7회 B씨에게 전화를 하고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벽을 치며 시끄럽게 하였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률뉴스 23.05.26)

- 스토킹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내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거나 그 주변 사물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접근해서 말을 걸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및 화분, 초인종, 벽, 창문, 차량 등 내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고 시도하는 행위가 물리적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② 매체를 이용한 스토킹: 원치 않는 전화, 문자, 메일, 사진, 물건, 영상, SNS 메시지 보내기

A씨는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은행 계좌로 211차례 1원 또는 100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썼다. 또한 닷새간 1,117차례 전화를 건 A씨는 스토킹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중앙일보 23.6.25).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가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B씨의 번호를 차단했다. B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해 약 한 달간 수십 차례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음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한겨레 23.05.30).

A씨는 혼자 사는 B씨의 집 앞에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맥주 한잔합니다.”라는 쪽지와 닭꼬치를 두고 갔다. 다음날 B씨의 집으로 같은 내용의 쪽지와 함께 치킨을 배달시켰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세계일보 23.08.05).

- 상대방 앞에 나타나 직접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전화, 문자, SNS 메시지, 사진, 영상,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또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꽃, 선물, 음식, 칭찬과 같이 긍정적인 듯 보이는 물건이나 메시지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둘 간의 관계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이나 공포를 느낀다면 스토킹 행위입니다.

◎ 온라인 스토킹: 개인정보 공유, 게시, 사칭 등

같은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집 주소, 학번, 실명, 연락처 등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알지 못하는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 저를 쫓아온 적이 있고, 집 근처에 낙서하거나 집으로 다섯 번이나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제 근황이 추가되고, 익명의 이용자들이 저에 대해 성희롱하거나 외모 평가를 했어요(한겨레 21.04.15).

A씨는 최근 들어 자주 본인의 SNS 계정에 익명으로 집요하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 괴롭다. 차단하지만 그때뿐, 새로운 유령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때문에 A씨는 SNS 활동을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법무부 공식 블로그, 23.8.14).

- 온라인 스토킹은 피해자에 관한 정보나 소문의 확산 속도가 오프라인보다 빠르고 확산 범위 또한 큼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이 다른 온·오프라인 스토킹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더라도 가해자와의 분리(접근금지 등) 조치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 상대방의 신체가 포함된 합성물 등을 온라인에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주소나 위치, 사진, 영상 등을 성매매 사이트에 올리거나 SNS 등에 공유해 다른 사람이 상대방을 찾아가게 하는 일명 “좌표 찍기” 또한 온라인 스토킹입니다.
-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 등에 가입하거나 물건을 주문하거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상대방인 척 활동하는 등 사칭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 더 알아두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스토킹〉

- 스토킹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껴 사생활의 평온함이 침해된다는 점임(대법원 2022도12037).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행위들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 등 고통을 겪는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 가해자가 직접 감시·추적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추적당하고 있다고 믿게끔 만드는 행위, 피해자의 디지털기기를 자의로 조작하여 곤경에 빠트리는 행위, 피해자의 주변인을 사칭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피해자를 곤경에 빠트리는 행위 등 법에 “스토킹 행위”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스톱킹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유형은 많음.
- 「스토킹처벌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행위더라도 형법상 협박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처벌 가능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톱킹〉

- 스톱킹 가해자 중에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거나 친밀한 관계(전·현 데이트 관계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주변인, 일상생활을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 폭력·협박의 범위가 넓고 정도가 더 심각하며, 그만큼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크다고 알려져 있음.
-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종결하려고 시도할 때 스톱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악화되기도 함.

4. 스토킹 관련 법률

- 스토킹 범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④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였고, 가해자가 정식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종용, 회유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 역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을 처벌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위반할 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	주요 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4.20. 시행: 2021.10.21. 개정 및 시행: 2023.7.11.	〈제정〉 • 스토킹 행위 및 범죄 정의 • 접근금지 등 가해자 제지 및 경고 조치(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규정 • 스토킹 범죄 양형 규정
	〈개정〉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 •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 전자장치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②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3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스톱킹 피해자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업무 관련 세부 사항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장이 피해자 긴급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 스톱킹 피해자 해고 등 직장 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였고, 공공기관 등에서 스톱킹 예방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주요 내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3.1.17. 시행: 2023.7.18.	•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직업훈련 지원 규정 •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와 업무 내용 규정 • 피해자 지원시설장이 피해자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경찰 직원 동행 요청 • 현장 출동 경찰에 대한 업무수행 방해시 과태료 부과 • 스톱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③ 스톱킹 범죄에 대한 처벌

- 스토킹 범죄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 스톱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또다시 스톱킹 행위를 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또다시 스톱킹 행위를 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 처벌은 본래 고발 또는 고소된 스톱킹 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 신고 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 등에 의해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 스토킹 행위·범죄에 대한 조치

-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진 1회성 “스토킹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조치’는 가능합니다.
- 경찰이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의 제지 등을 응급조치(제3조)하여야 합니다.
-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 조치(제4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제8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조치〉

● 응급조치:

- ① 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반복할 경우 처벌에 관한 서면 경고
- ②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③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④ 피해자에게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

● 긴급응급조치:

- ① 피해자(가족 및 동거인 포함)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1개월)
- ② 전화 등 온라인 접근 금지(1개월)
 -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요청 가능

● 잠정조치:

- ①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② 피해자(가족 및 동거인 포함)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3개월)
- ③ 전화 등 온라인 접근 금지(3개월)
-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개월)
-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1개월)
 - 조치의 연장: ② ③ ④항에 한해 3개월간 2회 연장 가능
 -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데이트폭력 개념 및 유형

1. 데이트폭력의 정의

데이트 또는 연애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일련의 강압적인 태도 및 행위

-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또는 연애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일련의 강압적인 태도 및 행위입니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데이트 또는 연애한 관계(전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사귀기 시작(썸)하는 관계, 공식적으로 교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정서적·성적 교감을 동반한 만남을 가지는 관계도 포함됩니다.

※ 더 알아두기

〈데이트폭력 vs. 교제폭력 용어 정립에 관한 논의〉

데이트폭력은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함. 교제폭력은 ‘데이트’라는 단어가 가지는 낭만적인 어감으로 인해 자칫 이 관계에서의 폭력이 사소하게 여겨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반면 데이트폭력은 ‘교제’라는 단어가 가지는 ‘공식적인 관계’ 또는 ‘진지한 관계’라는 어감으로 인해 좀 더 캐주얼한 연애 관계에서의 폭력이 형사실무 및 피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함.

용어는 다르지만, 두 용어 모두 혼인 상태가 아닌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위험성을 경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념화되었음.

2. 데이트폭력 피해 체크리스트²⁾

- 데이트폭력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수위도 다양합니다.
- 한 가지 유형의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유형의 폭력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① 언어·정서 폭력
- ② 행동 통제
- ③ 신체적 폭력
- ④ 성폭력·디지털성폭력
- ⑤ 경제적 폭력
- ⑥ 스토킹

※ 각 유형의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데이트폭력 피해에 해당합니다.

-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다면,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및 경찰의 개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행위가 아니라도, 상대방의 통제 또는 폭력으로 인해 두려움 또는 불안감을 느낀다면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언어·정서 폭력: 협박·모욕, 조종 등을 통해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

- ☐ 욕, 모욕, 위협의 말을 한다.
- ☐ 비난, 비하의 말을 한다.
- ☐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방 탓을 자주 한다.
-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일부러 당황하게 만든다.
- ☐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 ☐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한다.
- ☐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한다.
- ☐ 내가 미성숙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의도한다.
- ☐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협박한다.
- ☐ 위협을 느낄 만큼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낸다.
- ☐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한다.

2) 경기도 여성정책과(2022).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참고.

② 행동 통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바꾸려는 행위

-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 ☐ 통화, 문자, SNS, 위치추적 내역을 확인하고 감시한다.
- ☐ 연락이 잠시 안 되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 등을 한다.
- ☐ 무엇을 하기 전 허락이 필요하다.
- ☐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제한한다.
-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 ☐ 내가 하는 일이나 인간관계가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③ 신체적 폭력: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

- ☐ 팔목이나 어깨 등 몸을 힘껏 움켜쥐는다.
-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다.
- ☐ 세게 밀거나 당긴다.
- ☐ 뺨을 때린다.
- ☐ 할퀴거나 깨문다.
- ☐ 핸드폰, 신발 등 물건을 내 쪽으로 던진다.
- ☐ 내가 보는 앞에서 벽이나 문 등을 때리거나 발로 찬다.
- ☐ 자리를 떠나는 것을 힘으로 막거나 가두거나 강제로 어딘가에 가도록 한다.
- ☐ 화상을 입힌다.
- ☐ 목을 조른다.
- ☐ 흉기로 위협한다.

④ 성폭력·디지털성폭력: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 또는 상대방의 성적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 ☐ 강제로 스킨십하거나 성행위를 한다.
- ☐ 거부의 의사를 밝혀도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도한다.
- ☐ 거칠거나 폭력적인 성행위를 강요한다.
- ☐ 피임도구나 피임약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한다.
- ☐ 성병으로부터의 보호를 방해한다.
- ☐ 취했거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 접촉을 한다.
- ☐ 성관계, 임신 등의 경험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로한다.
-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문구를 보내거나 보내라고 강요한다.
- ☐ 합의되지 않은 성적·신체 이미지를 촬영한다.
- ☐ 성적·신체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한다.
- ☐ 내 얼굴이나 개인정보와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다.
- ☐ 나를 성적인 조롱·희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⑤ 경제적 폭력: 경제적 자산에 대한 권리를 자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행위

- ☐ 내가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해준다.
- ☐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나는 똑같이 쓰지 못하게 한다.
- ☐ 데이트통장 등 공동계좌에 같이 입금하도록 하지만 상대방 뜻대로 사용한다.
- ☐ 일(알바)자리, 일하는 시간 등을 제한한다.
- ☐ 핸드폰 등 나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가져간다.
- ☐ 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신용에 해가 되는 일을 한다.
- ☐ 선물이나 밥을 사고 그 대가를 원한다.
-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그 점을 이용한다.
- ☐ 카드 내역 등 소비품목을 점검한다.

⑥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집·직장·학교 일상생활 장소에 찾아오거나 주변에서 기다린다.
- ☐ 따라다니거나 내 진로를 방해한다.
- ☐ 원치 않는 선물, 꽃, 물건 등을 보낸다.
- ☐ 현관문을 부수거나 차에 흠집을 내는 등 내 주변의 사물을 훼손한다.
- ☐ 여러 번 전화하거나 원치 않는 문자, 메일, SNS 메시지를 보낸다.
- ☐ 문자, 카톡, SNS, 메일 등으로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낸다.
- ☐ 온라인에서 나의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 ☐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나인 척하거나 내가 곤경에 빠지는 상황을 만든다.

3. 데이트폭력의 유형

데이트 또는 연애 관계에서의

- ① 언어·정서 폭력
- ② 행동 통제
- ③ 신체적 폭력
- ④ 성폭력
- ⑤ 경제적 폭력
- ⑥ 스톱킹

① 언어·정서적 폭력

“맘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해요.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평소에도 그 사람 신경을 거스름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돼지’라고 부르고, ‘똥똥하다’, ‘못생겼다’...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만날 때마다 오늘 또 지적당하진 않을까 조마조마해요.”

“제 앞에서 제 주변 사람 욕을 계속 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너 걱정돼서 그래’ 라고 해요.”

“너 때문이야. 나 원래 안 이래. 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 언어적 폭력에는 욕설과 비하의 말, 비난, 모욕이 해당되며, 위협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또한 해당합니다.
- 일이 잘못되거나 싸움이 난 이유가 모두 상대방 탓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을 못한 사람인 듯 만들어 자존감을 떨어트리거나, 주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심리·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상대방의 정서를 억압하거나 조종하는 행위가 정서적 폭력에 해당됩니다.
- 반복적인 비난, 비하 등의 언어폭력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상대방을 위하고 걱정하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가해자의 조종, 심리적 지배가 지속되어 피해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과정 및 행위를 말합니다. 데이트 관계에서 언어·정서적 폭력이 지속되거나 여러 유형의 폭력을 경험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② 행동 통제

“직장에 회식이 많은데, 회식 때마다 계속 전화해요. 한번은 회식장소에 나타나 저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서 상사한테 한소리 듣기도 했어요. 업무 전화여도 남자 목소리만 들리면 누구냐며 캐물어요.”

“조금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도 난리가 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싫대요. 이제는 제가 포기하고 다 가리고 다녀요.”

-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나 기분에 따라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외모,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도록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신체적 폭력

“이런 기분으로는 같이 갈 수 없어서 싫다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저를 차에 밀어 넣더라고요. 그러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사고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애인과 싸우던 중에 뺨을 맞았어요. 너무 화가 나 아픈 것도 모르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잘못했다며, 다신 안 그러겠다며 문자를 보내네요... 실은 전에도 한 번 뺨을 맞은 적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울면서 빌어서 용서해 줬었어요.”

-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부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 직접 신체가 닿지 않아도 상대방 쪽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는 등의 행위, 강제로 가두거나 못 나가게 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

“사귀지 2주 된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요구해서 반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졌어요. 남자 친구는 사랑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하는데 저는 무섭고 싫기만 했어요.”

“애인이 소장하고 싶다고 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지우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애인이 ‘당연히 지웠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때 찍었던 영상 기억나? 나만 보긴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너 보고 싶으면 봐야지’ 하는 거예요.”

-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성적존엄성을 해치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 데이트 관계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호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 불법촬영, 유포협박, 채팅방 성희롱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폭력도 해당합니다.

◎ 경제적 폭력

“데이트통장을 만들어서 반반씩 넣고 있는데, 저는 카드를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 돈으로 뭘 할지 결정하는 건 전부 그 사람이에요. 계산할 때는 꼭
자기가 사주는 양 굴고요.”

“급하다면서 제 아이패드를 가져갔는데 세달째 돌려주질 않아요.
몇 번 말해봤는데 다음에 준다고만 하고.”

- 재산, 일, 소비생활 등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휴대폰이나 자가용 등 상대방 소유의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도 경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 스토킹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집 앞에 찾아오고, 매일 카톡을 보내면서 ‘네가 날 떠날 수 있을 줄 아냐, 성관계한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고,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해요. 요즘에는 부모님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해서
저 때문에 부모님이 위험해지실까 너무 두려워요.”

“유학할 때 만났던 애인데 술 마시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 안전하게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곧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한국 온 지 꽤 됐는데, 그만 연락하라고 할수록 집착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카톡프사에도 저랑 있었던 은밀한 사진을 올리고 그래요.”

- 과거 또는 현재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더욱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일상생활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낭만적 관계에서의 소유욕과 집착이 사랑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결합하여 폭력과 괴롭힘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성폭력, 주거침입, 스토킹 등 현행 형법 및 특별법 등으로 처벌 가능

④ 데이트폭력 처벌 관련 법률

- 스토킹과는 달리, 데이트폭력은 처벌을 따로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성폭력, 주거침입, 스토킹 등 현행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데이트폭력(폭행·협박)으로 신고·고소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 그러나 폭행·협박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폭행, 협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범죄(예: 성폭력, 감금, 주거침입, 스토킹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합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관련 법률의 예〉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디지털성폭력 등 데이트 성폭력: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데이트폭력: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형법」상 '협박의 죄'(제30장) 등
- 스토킹 유형의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④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데이트폭력의 경우 관련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아래와 같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경찰에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스토킹을 포함하여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이 포함된 데이트폭력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까지 중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112 시스템 등록
- 맞춤형 순찰
- 스마트워치 지급
- 임시숙소·보호 시설 제공
- 주거지 지능형 CCTV 설치
- 신변경호

3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참과 거짓

1. 스톡·데이트 폭력 발생 원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또한
성폭력·가정폭력과 같이
젠더폭력이에요.

◎ 젠더폭력의 연장선

-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추구되던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 및 역할(여성성), 남성의 모습 및 역할(남성성)이 있습니다. “남자는 터프해야 해.” “남자는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해” 또는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해.” “여자는 꾸며야 해.” 등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성적·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불평등하게 발현될 때 스톡 및 데이트폭력이 발생합니다.
-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폭력으로 대표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도구화하는 행위이고, 가정폭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구성원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 이렇듯 성별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젠더폭력이라고 합니다. 젠더폭력은 타고난 성별보다는 성별에 따라 달리 대우하고 대우받는 사회구조가 문제임을 지적하는 개념입니다.
- 스톡·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반드시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을 정복·소유할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거나 폭력적이게 행동해도 된다는 왜곡된 시각, 이를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미디어의 영향 등으로 인해 여성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더 큰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상대방의 행동과 삶을 통제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 스톡과 데이트폭력의 관계

- 스톡은 ‘행위’에 초점을 둔 개념인 반면 데이트폭력은 ‘관계’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 따라서 스톡은 데이트폭력의 행위 유형 중 하나이며, 데이트폭력은 스톡의 관계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림 1〉 스톡과 데이트폭력의 중첩성

- 현재 또는 과거의 데이트 관계에서 스토킹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애인이나 (전)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이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친밀하다고 여기는 관계에서 스토킹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피해의 영향은 상대방 및 상대방의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인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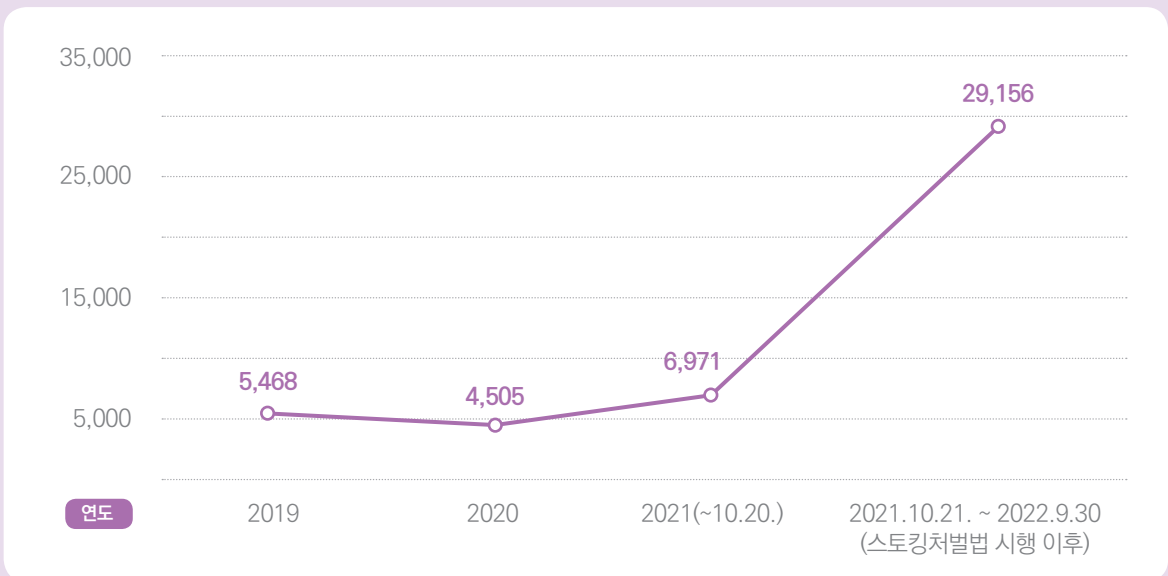
2. 스톡·데이트 폭력 현황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가 많아지고 있어요.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② 스톡 범죄 신고 및 검거 현황

- 경찰청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스톡 신고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이 중 실형이 선고된 1심판결은 63건이며, 평균 형량 또한 1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 현재는 스톡 범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경각심만큼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이 엄정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 38〉 전국 스톡 신고 및 검거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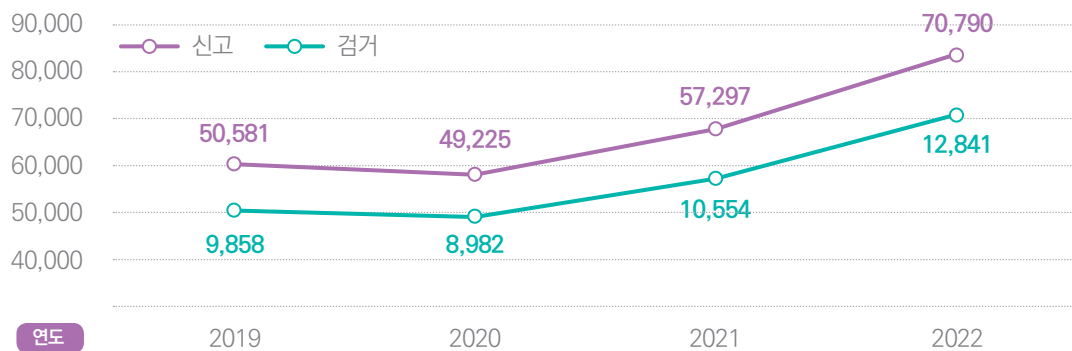
스토킹 범죄	2019	2020	2021 (~10.20.)	2021.10.21. ~ 2022.9.30.
신고	5,468	4,505	6,971	29,156
검거				7,141

출처: 경찰청

② 데이트폭력 신고 및 검거 현황

- 데이트폭력의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상습성과 연속성, 보복범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비 검거 건수가 낮은 편입니다.
- 또한 데이트폭력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폭행, 상해 행위 대부분이 여전히 단순 폭행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표 39〉 전국 데이트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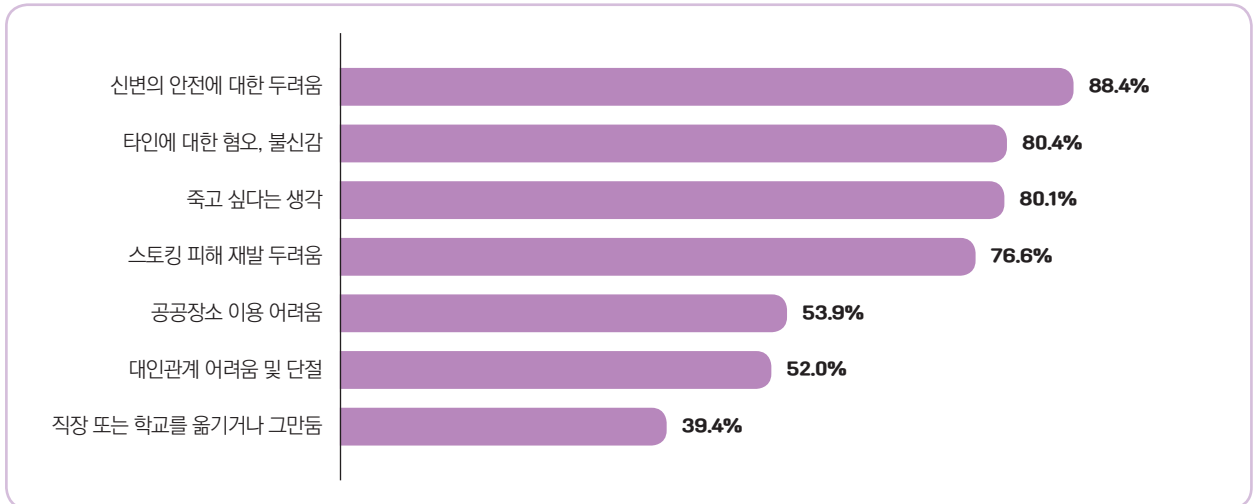
데이트폭력	2019	2020	2021	2022
신고	50,581	49,225	57,297	70,790
검거	9,858	8,982	10,554	12,841

출처: 경찰청 / 기타: 손괴, 보복범죄, 퇴거불응 등

②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 후유증

- 스톱킹·데이트폭력은 지속·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피해로 인한 후유증이 크며, 후유증의 지속 기간 또한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2차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표 40〉 스톱킹 피해자들의 겪는 후유증



출처: 스톱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2021)

3. 스톱킹·데이트 폭력 관련 잘못된 통념과 사실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확인하고 점검해봐요.

- 우리 사회에는 스톱킹·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잘못된 통념들이 있습니다.
- 잘못된 사회적 통념은 폭력의 발생 원인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핵심 내용이며, 폭력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통념은 나도 모르는 새 내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들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와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스톱킹·데이트폭력 관련 잘못된 통념과 사실

- ✓ 사랑이 과하면 스톱킹·데이트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 ✓ 사랑 또는 관심의 표현이 서툴러서 한 행동일 수 있다.

사실

사랑이나 관심이 아닌, 통제와 억압입니다.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이며,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 ✓ 스톱킹·데이트폭력은 남 연애사이다.
- ✓ 제3자가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

스톱킹·데이트폭력은 범죄이며,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사랑의 표현 또는 사랑싸움 등으로 폭력을 미화하거나 사소화하는 생각이 폭력을 지속시킵니다.

- ✓ 스톱킹·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일시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다.
- ✓ 친밀한 사이에서는 가끔 욕할 수도 있다.

사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려 하며 두려움을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점차 그 빈도나 행위의 정도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화풀이 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불평등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미리 기분을 잘 맞추거나 행동을 제대로 해야 했다.
- ✓ 피해자도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다.

사실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 발생하는 폭력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혹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맛을 짓'을 결정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가해자는 결국 폭력을 행사합니다.

- ✓ 폭력을 당하면서도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피해자도 가해자와 똑같다.

사실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통제나 폭력으로 인해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존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수치심과 고독감을 가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주변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파괴적인 관계임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가 지속됐을 경우, 가족·친구 등과 관계가 소원해졌을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르기도 합니다.

- ✓ 남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가해자일 리 없다.
- ✓ 가해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사실

많은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자신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만 폭력적입니다.

- ✓ 경제적·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피해는 경제력이나 학력,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다만 경제력·학력이 높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더 알리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 ✓ 피해자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으며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것이다.
- ✓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이 폭력적이다.

사실

피해자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폭력의 강도, 반복성, 지속성, 후유증에 있어 가해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연약한 피해자만이 진정한 피해자라고 단정 짓는 태도뿐 아니라 피해자나 가해자가 "똑같이" 폭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모두 피해자의 대응과 회복을 저해하는 2차피해 요소입니다.

- ✓ 젊거나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 ✓ 나이가 많거나 기혼인 사람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스토킹·데이트폭력은 나이 또는 외모와 관련이 없습니다. (전)배우자 또는 (전)연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력이므로 결혼 또는 동거 중인 상태에서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이거나 이러한 관계를 원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 ✓ 술 때문이다.
- ✓ 술만 안 마시면 괜찮다.



사실

술이나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약물이 폭력의 욕구를 표출하기 쉽도록 돕습니다. 통제와 폭력의 욕구는 술이나 약물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가해자 중에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스토킹·
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경기도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2

피해자 지원 길잡이

1.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2. 접수 및 상담
3. 서비스 지원
4. 상담가·조력자로서의 자세

경기도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1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1.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스토킹 피해자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데이트폭력 피해자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여성폭력 피해자’이니,
지원을 위해 애써야 해요.

-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스톱킹 피해자 역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① 스톱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②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 ③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 ④ 직업훈련 및 취업 정보의 제공
- ⑤ 피해자 등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 ⑥ 스톱킹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⑦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 ⑧ 스톱킹의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⑨ 스톱킹과 스톱킹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⑩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 ⑪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별도의 처벌법이나 방지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또는 스톱킹 피해가 포함된 데이트폭력 피해일 경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제14조1항)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스토킹 피해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또한 “여성폭력”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행위가 없는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여성폭력 피해자”로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³⁾

구분	내용	제도적 지원 가능 여부	
		스토킹 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
피해 상담	피해 상담 및 필요 서비스 지원·연계	가능	가능
법률	스스로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긴급피난처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임시보호, 숙식 지원 및 정보제공(최대 7일,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		
보호시설	보호시설 제공, 숙식 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 교육비 등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 훈련	이주여성 피해자에게 쉼터 제공 및 자활 훈련 지원		
의료비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지원		가능 (가정폭력 의료비 기준, 성폭력 피해가 있을시 성폭력 의료비에 준함)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2. 스톱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보호시설 등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서로 연계하며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대응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기능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보호시설 등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대응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 스톱킹·데이트폭력이 기관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기관들은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기관이 지원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는 (부록1. 유관기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주요 업무

해바라기센터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등 제공 3가지 유형(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 의료지원 • 심리상담 지원 • 수사 및 법률지원 •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365일 운영 • 젠더폭력 피해 초기상담 • 긴급피난처 운영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관련 기관 연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 젠더폭력 피해 초기상담 •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 • 수사 및 법률 지원 •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연계
피해자 보호시설	• 숙식(주거지원) 등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 • 수사 및 법률지원 •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등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된 젠더폭력 피해 초기상담 • 피해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수사 및 법률 지원 •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 •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연계

〈그림 2〉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피해 접수 및 상담, 안전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전문상담 지원, 의료 지원, 주거 및 경제적 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 피해 접수를 통해 피해의 맥락과 피해자 안전을 확인하고 상담 과정을 거쳐 사례를 종결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법률·전문상담·의료·주거 및 경제적 지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타기관과 연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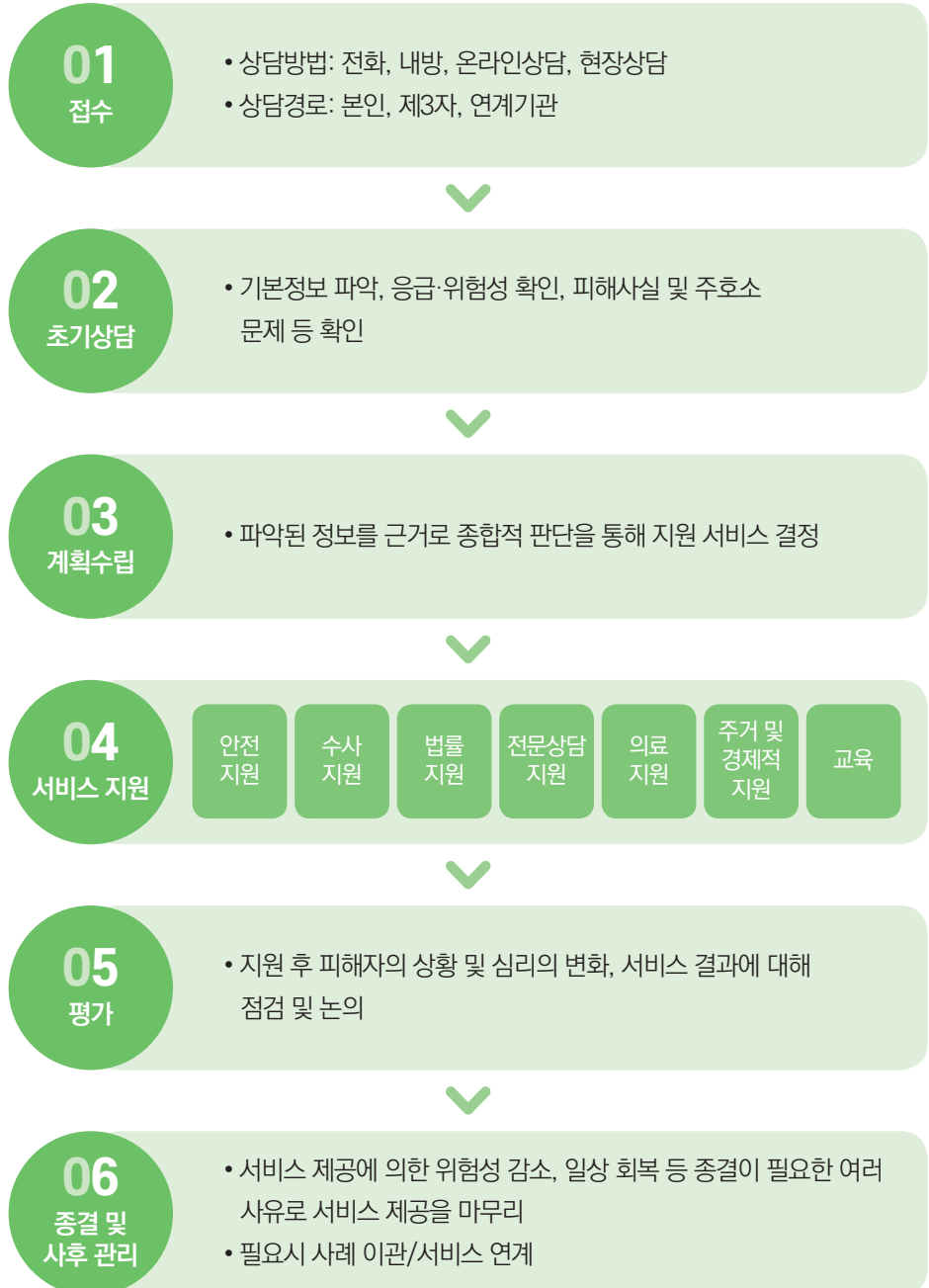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내용

지원 종류	내용
피해 접수 및 상담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접수 • 초기상담
안전 지원	• 피해자 안전 계획 •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경찰 협조 요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수사 지원	• 고소장 작성 안내 및 사건 구조화 • 피해자 보호조치 조력 • 진술, 조서작성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법률 지원	• 법률상담 • 민·형사 소송 지원
전문상담 지원	• 전문심리상담
의료 지원	• 진료 및 검사(해바라기센터) • 의료비·심리치료 비용(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지원
주거 및 경제적 지원	• 긴급피난처, 임시숙소, 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 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교육	• 피해·재피해·젠더폭력 예방교육

◎ 피해자 지원 절차

- 사례지원을 위한 상담은 일반적으로 ① 접수 ② 초기상담 ③ 계획수립 ④ 서비스 지원 ⑤ 평가 ⑥ 종결 및 추후 관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표 50〉 스톡·데이트폭력 사례 지원 절차 및 주요 업무



2

접수 및 상담

1. 피해 접수⁴⁾

- ① 전화상담
- ② 방문상담
- ③ 온라인상담
- ④ 현장상담
- ⑤ 관련기관 연계 접수

1. 전화상담

- 내담자의 자발성에 의해 상담이 시작됩니다. 내담자의 음성으로만 상담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담자가 다른 유형의 상담보다 더 많은 통제력과 주도성을 갖고 상담에 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상담가는 1회 상담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못한 문제를 구별하여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징

〈장점〉

- 목소리를 통해 내담자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으며 메모하거나 상담전략을 구상하는 일이 면접상담에 비해 수월함

〈단점〉

- 전화상담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면접상담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요구됨
- 내담자의 표정, 행동 특성 등 비언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유의사항

- 전화상담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벨소리가 2번이상 울리기 전에 받기
- “○○○ 상담소입니다” 라고 기관을 소개한 후 상담 진행
- 내담자의 피해 상황, 욕구, 안전 파악
- 기본정보 파악
- 내담자의 거주지역, 의사를 고려하여 해당지역 상담소로 연계 가능
- 지속적인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내방 일정 잡기
- 상담가 이름(가명), 기관 연락방법 또는 찾아오는 길 안내 후 상담 종료
- 다정하고 안정적인 톤을 유지하여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함

※ 법률지원 또는 주거·경제적 지원 시, 상담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을 참고.

※ 더 알아보기

〈침묵전화〉

- 상대방의 말을 기다려 주고 경청하고 있음을 알린 후 2~3분 이상 시간이 흐른 후에도 말이 없을 때는 상담을 원할 때 다시 전화하기를 요청하며 상담을 종료함

〈장난 및 시비전화, 음란성 전화〉

- 상담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함
-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 전화가 녹음되고 있음을 알림. 상대방에게 전화를 끊을 것을 권하고 불응할 시 상담가가 통화를 종료함

〈동일한 내용의 반복 전화, 스토리를 바꾸어가며 반복 전화하는 내담자〉

- 이전 상담과 연결하여 상대방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상담을 시작함
- 내담자의 욕구와 상담주제를 명확히 하여 대화의 범위를 설정함
“최근 상담 때 이런 내용으로 연락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 과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
-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고 안내 조치함

〈통화를 끊지 않는 내담자〉

- 위급상황, 자살 시도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 일반 전화상담은 30분 내외로 함
“상담이 30분 정도 진행되었고 오늘은 상담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2. 방문상담

- 내담자와 상담가가 대면하여 의사소통하는 상담의 기본 형태입니다. 시간의 제한, 내담자의 행동 제한, 상담가 역할의 한계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특징

〈장점〉

-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 상담 구조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며 필수적인 질문과 반응 등을 계획할 수 있음
- 내담자의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보고 들으며 더 많은 정보 파악 가능

〈단점〉

- 전화상담에 비해 내담자의 접근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적극성과 의지가 필수적임
- 내담자의 상담소 방문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존재함
- 상담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첫 내방시 상담가가 따뜻한 환영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제공
-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됨을 알림
-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 환경 구성
- 상담가의 질문이 불편할 때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됨을 고지
- 상담의 기본자세: '경청'과 '반영'
- 지원내용과 범위(수사, 법률, 의료, 상담, 주거, 회복, 기관 연계)에 대해 설명
- 내담자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하며 상호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상담
- 정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내담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확인 또는 내부 논의 후 전달
-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하되 상담원과 내담자의 경계 지키기
- 모든 결정은 내담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함

※ 법률지원 또는 주거·경제적 지원 시, 상담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상세히 기록

3. 온라인상담

- 채팅, SNS, 이메일, 게시판, 영상 상담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 특징

〈장점〉

- 시공간 제약이 적음
- 익명성으로 인해 상담가와 빠른 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솔직한 대화나 감정 표현 가능

〈단점〉

- 채팅, 이메일 등 글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표현의 제약이 있음
- 말로서 전달되는 피해자의 감정, 상태 및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 내담자 일방의 연락 두절 또는 지원 거절이 쉽게 이루어짐
- 위급한 상황에 있는 내담자에게 즉각적인 개입을 하기 어려움

• 유의사항

- 채팅, 이메일 등 글로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자로 작성된 상담 내용의 행간을 읽어야 함
- 상담 지속을 위해 상담 내용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답을 해야 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으로 유도

4. 현장상담

- 개입이 시급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신속한 개입을 위해 상담가가 내담자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형태입니다.
- 현장상담 시 상담과 더불어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신변보호, 의료 및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서비스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의사항

〈피해자 요청으로 현장상담할 때〉

- 상담전화가 피해자의 것인지 확인하고, 긴박한 상황으로 파악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여 경찰을 먼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
- 출동 전 피해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기(예: 가해자와의 격리, 긴급피난처 입소, 현장상담, 가해자 고소 등)
- 가해자와 함께 있을 시 상담이 불가함을 안내

〈경찰 출동 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상담할 때〉

- 경찰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미리 파악
- 가해자와의 격리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피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제3의 장소를 이용
-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떠날 때까지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관에게 보호 요청

〈제3자의 요청 또는 관련기관에서 요청할 때〉

- 의뢰인으로부터 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신변에 대해 정확히 파악
- 피해자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상담 지원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현장상담을 포함한 피해자의 욕구 확인 후 서비스 지원

※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해자 및 상담가 안전 확보

※ 현장상담시 안전 수칙

- 2인1조로 출동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
- 출발 전 기관에 내담자와의 상담내용, 출동장소, 현장출장 이유 등을 보고
-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
- 위기상황 발생시 직접 해결하기보다 경찰 등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우리 기관에 보고하여 상황에 대처
- 피해자나 가족에게 개인 명함을 주지 않으며,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현장상담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5. 관련기관 연계 접수

- 내담자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대면하여 상담이 진행되지 않고 내담자를 먼저 접한 기관으로부터 내담자의 피해 지원을 요청받는 형태입니다.

• 유의사항

- 의뢰기관과 의뢰인(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
- 내담자의 피해, 현재 상황 및 욕구, 현재까지 제공된 서비스 등과 같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받음
- 의뢰한 기관이 내담자에게 “연계한 기관에서 내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갈 것임”을 안내해 주길 요청
- 의뢰기관과 내담자의 욕구 및 상황 이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원

2. 초기상담

파악해야 할 내용:

- ① 기본정보
- ② 접수경로
- ③ 상담 경험
- ④ 응급 위험성
- ⑤ 피해사실 및 주소소재지
- ⑥ 피해자 상태
- ⑦ 지지자원
- ⑧ 피해자 욕구

- 초기상담은 스톱·데이트폭력 피해자가 1)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찾고, 2) 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3) 앞으로의 회복과 성장의 힘을 도모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초기상담 시 유의사항

- 초기상담은 피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용기에 대한 응답이며, 상담가는 피해자의 지지자원입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하기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며 피해자와 피해에 대해 알아갑니다.
- 스톱·데이트폭력 피해자는 피해의 심각성을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거절할 때 예상되는 더 큰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가해자에게 연민을 가져 피해 대응에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스톱·데이트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며 세심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안전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 현재 피해자가 안전한 상황에 있는지, 최근에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
-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이나 통제가 지속되고 있거나 가해 행위의 강도가 세지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속히 지원
- 112 신고 후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필요할 경우, 긴급주거지원, 임시보호소 등 주거지원제도를 이용
- 안전을 위해 피해자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들을 피해자와 함께 계획

※ 피해자 안전 계획하기 54쪽

〈폭력 피해임을 분명히 하기〉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또는 스톱·데이트의 경우,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제 및 폭력을 '사랑'이나 '관심'으로 여기기도 하고,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피해자 본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함
- 통념상 심하지 않아 보이는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또는 일상의 통제 또한 '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

〈내담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지 말기〉

- 피해자를 '피해를 당한 약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
- 피해자의 내면의 힘을 믿고, 피해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

※ 더 알아보기

〈피해자가 망설이는 경우〉

- 피해사실 축소, 자기 비난, 의존성, 죄책감, 자존감 결여, 인지왜곡 등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증상임
- 피해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폭력적인 관계에 머물기를 선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원을 거부할 수 있음
- 설득을 포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망설인다면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음

〈피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누군가 나를 따라다닌다”, “감시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날 괴롭힌다” 등 스토킹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러한 진술은 관계망상이나 피해망상의 대표적인 내용이기도 함
- 내담자가 보고하는 피해 내용의 현실성, 전후관계, 상황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세심히 살필 수 있어야 함. 심문조사처럼 기준이 엄격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신중한 자세 또한 요구됨
- 탐색과 사정의 과정을 거쳐 내담자의 피해가 허위라고 판단될 경우라도 내담자가 호소하는 ‘피해사실’을 부인하지 않기. 내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병원 상담 등을 권유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

2. 파악해야 할 주요 내용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초기 상담시 상담가가 파악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담자의 인적사항과 접수경로, 상담경험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현재 안전이나 피해 사실 등 피해 관련 정보, 피해자의 욕구나 지지자원과 같이 개입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① 인적사항

- 개인정보(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거주지 등 가명, 연령대, 거주 동네 등 대략적인 정보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② 접수경로

- 본인, 지인, 경찰, 타기관 연계 등
- 내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내담자가 피해자 본인이 아닐 시 피해자의 동의 필수)

③ 상담 경험

- 본 상담 이전 상담 경험 및 이유, 서비스 지원 등 여부

④ 응급·위험성

- 폭력의 정도·반복성·점진적 심각성
- 가해자와의 분리 여부
- 피해자의 신체·정서적 상태
- 경찰신고, 해바라기센터, 긴급피난처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긴급개입 필요성

⑤ 피해 사실 및 주호소문제

- 스톱·데이트폭력 피해 유형, 폭력 피해 기간 및 정도
- 가해자와의 관계 및 친밀도
- 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문제
- 경제적 문제(거주, 생활비, 채무, 일자리 등)
- 동거인 및 가족의 위험도 등

⑥ 피해자 상태

- 신체·정서적 문제 또는 어려움

⑦ 지지자원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지인 등

⑧ 피해자 욕구

- 피해자가 원하거나 바꾸고자 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 사법처리 과정 중인 경우,

① 경찰단계

- 언제, 어느 경찰서에서 진행했는가.
- 스톱·데이트폭력 신고시 경찰이 안내하거나 조치한 내용
- 가해자 진술 여부
- 제출한 증거자료
- 국선변호인 등 변호사 선임 여부

② 검찰단계:

- 검찰로 송치 시 경찰 수사 의견(기소/불기소)
- 담당 검찰 배정 여부
- 검찰 기소/불기소 여부

③ 재판단계: 재판 진행 현황 등

3. 상담시 확인 사항⁵⁾

- 상담 후 본격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 상담을 통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 안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피해자에게 인사하셨나요? 상담 시간을 안내하셨나요?
- ☐ 피해자가 오늘 상담받고자 하는 이유(계기)를 파악하셨나요?
- ☐ 피해자가 현재 안전한 상황인지 파악하셨나요?
- ☐ 핵심 사건의 사실관계(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내담자의 대응)를 파악하셨나요?
- ☐ 피해자(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하셨나요?
- ☐ 피해자 주변의 지지자원(사람, 경제적 상황 등)을 탐색하셨나요?
- ☐ 상담 및 지원 목표를 설정하셨나요?
- ☐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하셨나요?
- ☐ (법적 대응 중인 경우) 소송의 종류, 단계, 쟁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셨나요?
- ☐ (지원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셨나요?
- ☐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으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다루셨나요?
- ☐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찾으셨나요?
- ☐ 피해자의 강점을 충분히 조명하고 지지하셨나요?
- ☐ 피해자가 가진 잘못된 통념이 변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4. 타기관으로 연계

- 이용자의 욕구에 대해 우리 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보다 타 기관 연계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찾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타기관으로 연계시, 내담자가 문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연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지원 내용을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내담자의 동의를 거쳐 우리 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여 의뢰합니다.

5.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 상담⁶⁾

◎ 아동·청소년 피해 상담

- 아동·청소년 상담시 전 지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상담가를 신뢰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국여성의전화(2019).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참고.

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참고.

〈상담시 태도〉

- 상담가가 아동·청소년에게 믿고 이야기할 만한 존재가 되어주기
- 아동·청소년의 이야기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조건 없이 끝까지 경청하기
-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음을 잊지 말기
- 아동·청소년이 계획과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하나씩 성취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주기
- 아동·청소년이 새로운 자원을 쌓아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 하기

-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사건 대응에 한계가 크기 때문에 보호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아동과의 관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태도와 반응은 아동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상담, 교육, 지지가 병행되면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피해 당사자의 인식과 걱정을 충분히 듣고 그 염려를 다루며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판단과 결정에서 미숙할 수 있으며 지지체계가 빈약할 경우 소극적 태도를 취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상담가의 충분한 지지와 조언이 더욱 필요합니다.
- 상담시 보호자와의 동석 여부는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하며, 대체적으로 피해자 단독 면접이 더 적절합니다.
- 청소년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피해에 대해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상황과 청소년의 인식, 지지자원 등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청소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파악할 내용〉

• 아동일 경우

- 가해자의 법적 지위 및 관계 특성(형사미성년자, 보호관찰 여부 등)
- 피해 아동의 의사 표현력, 인지 능력, 진술 능력 정도
- 보호자의 피해 인지 여부, 인지 시기, 인지 경로, 인지 후 반응
-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기본 태도 및 피해 후 태도
- 피해 아동의 주변 반응 및 태도(2차피해 및 지지자원 파악)

• 청소년일 경우

- 가해자의 법적 지위 및 관계 특성(형사미성년자, 보호관찰 여부 등)
- 피해에 대해 누구와 의논했는가. 누구를 신뢰하는가(지지자원 파악)
- 보호자(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한가(부모의 개입, 역할, 지지자원 가능여부 파악)
- 또래집단과의 관계 및 반응(2차피해 파악)
- 기존 적응 수준 및 기능
- 자살생각 및 자해시도 경험 유무

◎ 장애인 피해 상담

- 상담가는 전 지원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상담가를 신뢰하고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시 태도〉

-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전제하지 않기
 - 피해자의 장애에만 집중하여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장애로 돌리지 않기
 - 장애 여부를 떠나 젠더폭력은 사회적 권력의 문제라는 점 잊지 않기
 - 장애유형의 특성을 모든 장애인의 특성으로 일반화하지 않기
 - 장애인 피해자가 피해 대응 및 지원의 주체임을 잊지 않기
-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상담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가 원하는 의사소통 방법 및 편의시설을 물어보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비장애인 내담자보다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에 따라 내담자가 이해하기 쉽게 쉬운 표현과 문장으로 바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짧고 명료하게, 개방형으로 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악할 내용〉

-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 가해자의 법적 지위 및 관계 특성(형사미성년자, 보호관찰 여부 등)
- 교육 수준: 학교 교육 여부, 시설 내 교육 여부 등
- 인지 수준: 시간, 장소 등 피해 진술에 필요한 개념에 대한 인지 정도
- 가족 관계: 가족과의 관계 및 특성, 피해에 대한 가족의 인지 여부 및 반응
- 사회적 관계: 피해자가 신뢰하는 주변인, 규칙적으로 만나는 주변인 등

5. 상담의 예시

- 다음은 상담을 진행하며 종종 겪을 수 있는 상황과 대응에 대한 예시입니다.

〈내담자의 문의 내용에 대해 결정이나 확신이 어려울 때〉

- 바로 대답하기보다 신중하게 응대하는 것이 좋음. 상담을 잠시 중단하고 선임 상담가 또는 동료에게 문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아 상담을 재개하는 것이 좋음
-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 확인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기관 내에서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담자가 원하는 바를 잘 말하지 않을 때〉

- 다양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음
“어떤 지원을 원하세요?” “어떤 점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 수 있을까요?”
- 내담자가 원하는 바를 모를 때에는 상담가가 다양한 지원과 장단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함

〈내담자의 표현이 막연하거나 기존에 했던 말과 다를 때〉

- 다시 한번 질문하여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어떠신가요?”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내담자가 말을 잘 하지 않을 때〉

- 경청과 기다림으로 내담자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며 내담자의 맘을 열도록 노력함
“듣고 있어요.”
“말씀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 그래도 내담자가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초기상담이므로 내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내담자가 원하는 범위까지만 이야기 나누고, 다음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

〈초기 상담시 도움이 되는 말과 태도〉

도움이 되는 말

-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 그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 마음이 아파요.
- 이렇게 연락한 것은 용기 있고 잘한 일이에요.
- 우리는 당신과 함께 방법을 찾아나갈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태도

- 말을 자르고 피해 상황에 관해 묻기
- 일반화해서 말하기
- 성급하게 조언하기
- 지나친 이입 또는 감정 표현
- 충분한 이해 없이 ‘다 잘될거야’ 등 쉽게 위로하기

3. 지원계획 수립

종합적 판단 후, 수사, 법률, 의료, 전문상담, 주거, 기타 지원, 타기관 연계 등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수립해요.

③ 계획수립의 주요내용

- 계획수립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보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내담자에게 지원할 서비스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계획수립〉

-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지원 서비스 결정
- 사례회의 등 종합적 판단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 피해상담 서비스에 대한 안내
-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진행

③ 사례회의

- 계획수립을 위한 사례회의는 지원 과정 동안 수시로 진행하여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이행 상황 및 피해자 심리, 욕구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해당 서비스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등을 판단합니다.

〈사례회의 유형〉

내부 사례회의

- 초기상담 이후 사례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하거나 긴급하게 논의가 필요할 때
- 상담가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여 내담자로부터 취합한 전반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지원 계획을 일차적으로 수립하여 사례회의에 참석

통합 사례회의

- 피해가 중첩되어 있거나 단순하지 않을 경우, 지원과 관련한 분야의 여러 상담가, 담당자가 사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

외부 전문가 사례회의

- 법률, 의료, 청소년 전문가 등 사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례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는 회의

● 서비스 지원 및 연계

- 사례회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지원 계획을 시행합니다. 서비스 지원 중에도 사례회의를 진행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합니다.

※ 기관 예산 및 집행 가능 금액 등 확인

서비스 지원



4. 안전계획

당장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계획이 중요해요.

- ① 지지자원 활용하기
- ② 일상환경 보안 강화
- ③ 긴급상황 시뮬레이션
- ④ 휴대폰 활용
- ⑤ 자살 위기 개입

- 당장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본 서비스 지원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안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 특성, 욕구에 맞추어 피해자와 함께 맞춤형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 계획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로서 아래와 같은 계획이 포함됩니다.

-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을 때를 감지하는 것
- 현실을 점검하는 것
- 안전해지기 위해 특정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
- 신고 및 고소 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다음은 스톱킹·데이트폭력 안전 계획 방안의 예시입니다.

1. 지지자원 활용하기

- 피해자가 신뢰할 만한 지인, 가족의 지지와 도움을 통한 안전 계획입니다.

〈신뢰할 만한 지인에게 폭력 피해 말하기〉

- 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고 내가 며칠 동안 안 보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도록 부탁
- 원치 않는 연락이나 피해 사진 등 피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주 전송

〈신뢰할 만한 지인과 정기적 연락〉

-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지인과 정해진 요일 또는 시간에 정기적으로 연락 취하기
- 정해진 시간에 피해자의 연락이 없을 시 지인이 취해야 할 행동(신고, 가족에게 연락 등)을 숙지하도록 함

〈신뢰할 만한 지인과 암호 설정〉

- 특정 단어를 암호로 지정하여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려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대비
- “다음에 ‘케익’ 사갈게.” “너가 지난번에 얘기한 ‘꽃집’이 어디지?”

2. 일상환경 보안 강화

- 현관, 차량, 고지서, SNS 등 일상환경에서의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안전계획입니다.

- 현관 및 방문, 창문 고리의 잠금장치 바꾸기
- 현관 및 방문, 창문 보조키 및 이중장치 설치
- 현관 CCTV 또는 조명 설치
- 차량 위치추적기 사용
- 고지서 이메일로 받기
- 호신용품 구비 시 피해자의 신체, 경험,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선택

3. 긴급상황 시뮬레이션

- 가해자를 갑자기 마주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떠나야 할 때와 같은 위급 상황에 대해 상상하며 효과적인 대피방법을 찾고 여러번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실제 위급상황이 닥쳤을 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유도하기, 차분하게 대처하기, 스마트폰 긴급전화 활용하기 등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머릿속 또는 거울 앞에서 연습하기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유도하기, 차분하게 대처하기, 스마트폰 긴급전화 활용하기, 소리 지르기, 호신용품 사용하기 등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또는 거울 앞에서 연습하기

〈집, 모텔 등 실내 공간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디로 나갈 것인가? 어느 문? 창문? 계단? 엘리베이터?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극하지 않기, 휴대폰 앱 활용하여 몰래 신고하기 등

〈긴급하게 떠나야 할 때 어디서 지낼 것인가? 무엇을 챙길 것인가?〉

- 어디로 갈 것인가? 중요한 문서나 챙겨야 할 물품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신뢰할 만한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4. 휴대폰 활용

- 휴대폰(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빠르게 위험상황을 알리거나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설정·활용하는 방안입니다.
- 다음의 예시들을 살펴보며 피해자의 휴대폰 기기 종류, 휴대폰·인터넷 활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휴대폰 기능을 설정합니다. 위급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두거나 시뮬레이션합니다.

〈휴대폰 긴급전화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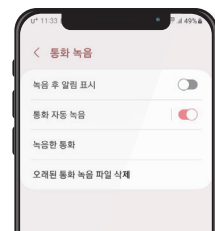
- 휴대폰 잠금상태 또는 화면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속히 SOS를 할 수 있도록 함
- 112 신고, 지인에게 전화, 사이렌, 플래시, 페이크콜, 내 위치 전송, 자동 녹음 등 기능
- 음량버튼 5초간 누르기, 휴대폰 5번 흔들기 등 설정을 통해 긴급상황 전송 가능
- 사용 방법
 - 갤럭시: 설정-안전 및 긴급-긴급SOS
 - 아이폰: 설정-긴급 구조 요청
 - 앱: “경기도 안전귀가”, “긴급신고 바로”, “긴급SOS” 등 앱 다운로드 후 설정



※ 설정 완료 후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 숙지 및 연습

〈휴대폰 자동통화녹음 설정〉

-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
- 사용방법
 - 갤럭시: 기본 전화 앱에서 설정(모든 통화 녹음 및 저장 추천)
 - 아이폰: “스위치” 등 앱 다운로드 후 설정(자동 녹음 및 녹취, 무료 월 30분, 번호 선택 후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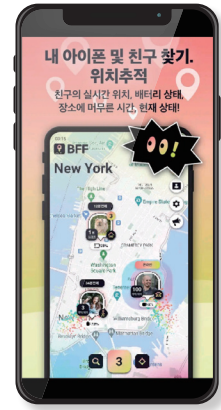
〈휴대폰 위치추적 활용〉

- 위치추적 앱 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 또는 피해자 차량의 위치 등을 신뢰할 만한 지인이 알 수 있도록 설정
- 사용 방법: 도와줘, 지나리, MixerBox BFF 등 앱 설치 후 사용



〈휴대폰 위치추적 제거〉

- 가해자가 위치추적 앱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위치 또는 피해자 차량의 위치 등을 알고 있는지 확인
- 확인 후 앱 제거 또는 다른 대응전략, 안전계획 세우기



〈SNS, 웹사이트 등 개인정보 보안 강화〉

- 아이디, 비번 등 교체
-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은 플랫폼 탈퇴
- 상대방이 나의 위치정보나 신상을 추적할 수 있는 SNS 등 중단·탈퇴

이메일/비밀번호 찾기
가입
탈퇴
도움/해킹 의심
휴면계정
보호조치
카카오계정 통합
연력인증/본인인증
2단계 인증
국가별 로그인 제한

〈현관 CCTV + 스마트폰 연동 도어가드 설치〉

- 현관 CCTV를 통해 휴대폰으로 내 집 앞 방문자 확인
- 귀가 시 실시간 현관 앞 모니터링 가능
- 위급시 출동 보안 서비스 가능
- 사용 방법: 캠프홈, 도어가드, ADT 캅스 등 검색 후 적합한 상품 설치 및 사용



5. 자살 위기 개입⁷⁾

-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자살 징후나 자해 이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자살 위기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기관 내 공유하고 사례회의를 시행합니다.
- 자살 위기 피해자의 경우 긴급히 개입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단 상담보다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중앙자살예방센터(2013). 「자살위기 상담매뉴얼」 참고.

〈자살위험신호〉

정서적 변화

- 감정상태의 변화
- 무기력, 대인기피, 흥미상실
- 외모,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무관심

행동 변화

- 식사, 수면 패턴의 변화
- 신체적 불편함 호소
- 물질남용 또는 자해행동
- 중요한 것을 남에게 주는 등 주변 정리

언어의 변화

- 자기비하적인 말을 자주 함
- 죽음, 살인, 자살에 대한 말을 자주 함
-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생각하거나 자살 계획에 대한 언급

• 자살위기개입

구분	체크사항	개입방법
고위험	● 자살준비도구 ● 긴박함, 일촉즉발의 위험성 ● 자살시도 경험 있음 ● 정신과 증상 ● 극단적 비관	● 긴급상황임을 인식하고, 경찰과 119구급대 등에 연락 ● 가족 및 가까운 지인이 상황을 확인하도록 함 ● 내담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함 ● 자살도구 제거 확인 ● 병원 입원 또는 진료 확인 ● 보호자가 곁에 있는지 확인 ● 지속적인 심리상담 모니터링
중간위험	● 비교적 구체적인 자살계획 ● 낮은 치명성 ● 중단기 위험성(며칠, 몇 주 이내)	● 내담자와 자살을 하지 않기로 안전 약속 ● 자살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 ● 잠재적 자살도구 제거하도록 권유 ● 가까운 지인 등 지지자원을 확인하고 활용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응급 서비스 안내(상담전화, 관련 지원기관 등)
낮은위험	● 자살생각은 있으나 자살계획 없음 ● 장기위험(오랜 시간 후에 시도할 수 있음)	● 정서적 지지 ● 일상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 관리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

5. 평가 및 종결

피해자의 호전 정도, 목표 달성 등을 파악하고 지원을 종결해요.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포함한 근황을 확인해요.

- 내담자의 욕구와 상황적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한 이후 피해자의 호전 정도, 목표 달성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합니다.
- 이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위험성이 감소하거나 일상이 회복되는 등 피해자 지원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지원을 종결하고, 종결 이후 피해자의 안전을 포함한 근황을 확인하며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평가〉

- 서비스 제공 이후 피해자의 상황 및 심리의 변화, 목표 달성 정도, 서비스 진행 과정 및 내용·만족도 조사
- 서비스 결과에 대해 점검 및 논의

〈종결 및 사후관리〉

-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의한 위험성 감소, 일상 회복 등 종결이 필요한 여러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마무리
- 종결 유형: 위험성 감소, 개입목표 달성, 거부, 연락두절, 장기부재 등
- 종결 준비: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리뷰, 격려, 지지 등을 통해 종결 이후 긍정적 변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
- 필요시 사례 이관/서비스 연계
- 피해 예방 및 재발에 대한 대처방법 안내
- 종결 이후 피해자의 안전을 포함한 근황 확인
- 위기대처 능력, 문제 상황, 자원, 피해자 상태 등 재확인

〈지원을 종결하는 경우〉

지원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

- 문제가 해결되고 이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담자가 대응해 나갈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경우
- 상담 목표를 내담자와 논의하고 목표 달성에 내담자가 만족한 경우
- 상담 목표 달성으로 인해 상담 종결에 내담자와 상담가가 합의한 경우

상담가에게 내담자의 욕구를 실현할 시간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

- 다른 상담가 또는 다른 기관 추천

내담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종결을 원하는 경우

- 언제든지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음을 안내

3

서비스 지원

1. 수사 및 법률 지원

※ 스토킹 피해자는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해요.

형사소송: 가해자 처벌
경찰단계 - 검찰단계 - 법원단계에 따라 안내할 사항과 지원이 달라져요.

민사소송: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구분됩니다.
- 형사소송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대응인 반면, 민사소송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대응입니다.
-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의 주체는 검사이며, 검사가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합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증인 자격이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국선변호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주체는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직접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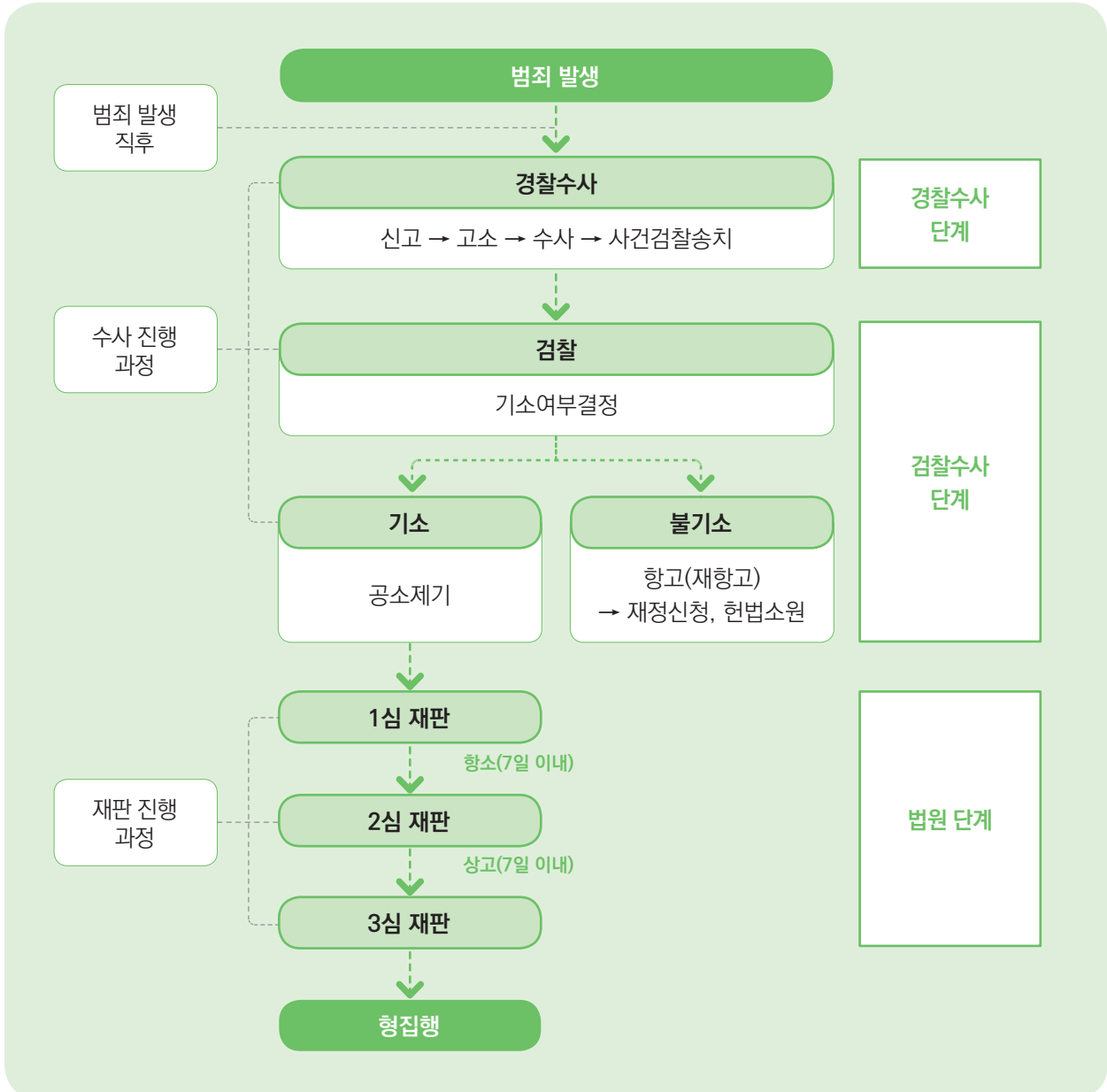
◎ 법률 지원 및 구조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시 국선변호인 선임 및 무료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불성실 등의 이유로 변경을 원할 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역시 무료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 무료법률구조시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시설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합니다(여성가족부,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 형사사법절차

- 형사사법절차는 경찰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로부터 시작합니다. 형사사법절차는 가해자 법적 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의 절차로서 크게 경찰단계-검찰단계-법원단계로 구분됩니다.
- 수사 및 법률지원에서 상담가의 역할은 경찰단계로 들어가는 초기 신고부터 법원단계의 결과 선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



2.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지원

-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심리적 지지자 되기, 사건 구조화, 고소장 작성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2차피해 여부를 살피고 대처하는 서비스까지 경찰단계에서 가능한 지원 전반이 포함됩니다.

〈법적대응 이전 단계 확인 사항〉

- 민사/형사 소송 설명
- 법적 대응의 장단점 안내
- 공소시효, 소멸시효 계산
 - ※ 「스토킹 처벌법」 제정 시행일(2021.10.21.) 이후 발생한 스톱킹만 처벌 가능
 - ※ 「스토킹 처벌법」 개정 시행일(2023.7.11.) 이후 발생한 온라인스토킹만 처벌 가능
- 피해자의 법적 대응 목표 확인
- 법률상담 또는 법률구조 연계
- 가해자의 화유, 압박, 역고소 등 대비

● 신고 및 고소

- 신고 또는 고소 전에 상담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경험한 스톱킹·데이트폭력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과 그 법의 공소시효를 확인합니다. 특히 스톱킹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비교적 최근에 제·개정된만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장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고의 기록은 피해 증명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에 대해 안내해 두어야 합니다.
-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온당하고 용기 있는 대응을 지지하며 지원합니다.

- 경찰에 신고·고소·고발·진정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됨
 - 신고: 전화나 방문, 앱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112 또는 112긴급신고 앱, 지구대 등 경찰서 방문
 - 고소: 범죄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 고소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함
 - 진정: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에 대한 해결을 구하는 의사표시
 - ※ 경찰의 입건 전 조사 종결 가능
 - 고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진정·고발은 경찰서 민원실,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 수사민원 상담실 등을 방문하여 진행
- 1순위 가해자 관할서, 2순위 사건발생지 기준. 둘 다 모르는 경우 피해자 거주지 기준으로 신고·고소
 - ※ 피해자 거주지 관할서의 경우 방문·진술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건이 이관될 시 진술을 여러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
- 아동·청소년일 경우 경찰청에 우선 신고
- 형사고소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나 진술이나 조사 등의 수사과정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필요함
 - ※ 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경찰에서는 신고 내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

◎ 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

- 스톱·데이트 피해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아 경찰이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스톱·데이트 피해자에게 신고 또는 고소 시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합니다. 신고 또는 고소 후라면 경찰이 다음의 조치 중 하나를 시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합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조치' 후에 가해자가 또 연락·접근을 하였을 시 경찰에 반드시 이를 알려 경찰이 가능한 다음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응급조치:
 - ① 스톱·데이트 행위의 제지 및 반복할 경우 처벌에 관한 서면 경고
 - ②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③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④ 피해자에게 스톱·데이트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
- 긴급응급조치:
 - ① 피해자(가족 및 동거인 포함)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1개월)
 - ② 전화 등 온라인 접근 금지(1개월)
 - 조치의 연장: 불가능
 -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요청
 - 위반하지 않고 긴급응급조치가 종료(1개월)된 경우: 긴급응급조치 재신청 또는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 잠정조치:

- ①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② 피해자(가족 및 동거인 포함)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3개월)
 - ③ 전화 등 온라인 접근 금지(3개월)
 -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개월)
 -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1개월)
-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승인 필요
 - 조치의 연장: ② ③ ④항에 한해 3개월간 2회 연장 가능(총 최대 9개월)
 -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더 알아보기

- 스토킹 응급조치 등은 범죄피해자안전조치(스마트워치 지급 등)와 병행 가능
- 단기간 이루어진 1회성 “스토킹 행위”에 대해 곧바로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신고에 따른 응급조치(제3조)는 가능
-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제4조)
-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제8조)
- 각 조치는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최대 기한 및 연장 가능 여부가 정해져 있음
- 조치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스토킹할 시 더 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또다시 스토킹할 시 조치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긴 경우, 옮긴 주소지로 ‘조치’ 변경 요청

- 데이트폭력은 범죄 행위에 따라 법률상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별도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경찰에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포함된 데이트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로 중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112 시스템 등록 | ● 임시숙소·보호 시설 제공 |
| ● 맞춤형 순찰 | ● 주거지 지능형 CCTV 설치 |
| ● 스마트워치 지급 | ● 신변경호 |

◎ 증거 확보를 위한 안내

- 고소 이후 사법절차에서는 피해의 흔적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당장 신고나 고소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폭력의 흔적을 모아두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 흔적이 되는 것들

기록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자세히 기록 - 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연락 등을 기록하거나 캡처
폭력, 협박의 증거물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 기록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 - 원치 않는 연락이나 폭력을 멈춰달라는 의사를 밝힌 문자·통화내역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주변인에게 폭력 피해를 호소한 기록
경찰신고 및 상담기록	112에 신고 및 상담기관 상담 기록
병원진단서	-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가 크게 보이는 사진, 상처와 얼굴이 함께 나오는 사진 각각 찍어두기 - 병원에 가서 스톱킹 또는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이 남기기 - 상해 진료기록 작성 또는 상해진단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도록 안내

◎ 고소장 준비

- 피해자가 고소장을 준비하기 위한 사건 정황, 기록,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장은 미리 작성해 가는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작성시 증거 및 기록을 사전에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과 함께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및 기록 함께 제출
- 고소장은 피해 내용 및 처벌 의사를 밝힌 문서로서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가해자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관계인지 기술
- 각각의 피해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 정확한 일시는 아니더라도 ‘고2 가을경’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음

※ 장기간 여러차례 피해를 입어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첫 번째 피해 → 가장 잘 기억하는 피해 → 행위의 형태나 범주가 이전과 달라지는 피해 → 그 외 특별히 기억나는 피해 순으로 접근하면 효과적임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서 조사 및 진술 과정에서 동행하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 대상자〉

-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재량 허용)
- 13세미만, 심신미약,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원칙적 허용)

● 피해자 조사

-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기간은 피해자 조사 이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관계인이 많거나 가해자 소재 파악이 어려운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해자 조사를 먼저 시작한 후 가해자 조사 진행합니다. 피해자 조사 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물을 확인하며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알아두기〉

- 해당부서(○○경찰서 ○○과 ○○팀),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 확인
- 피해자 조사 날짜 및 시간 조정 가능
-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서를 받았거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 여부 확인
- 피해자가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피해자보호조치 요청을 권유하고 수사기관 동행
- 피해자를 고려한 조사환경인가 확인
- 가해자 혹은 지인들의 회유·압력 여부 확인
-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사용 가능
- 피해자의 신뢰관계동석인으로서 참석할 경우, 피해자 진술 시 가급적 개입 자제
- 피해자가 수사관의 질의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추가 설명
- 가명조서 작성 가능
 - ※ 면식범, 연인사이였던 경우도 가명조서 작성 가능
 - ※ 지구대, 파출소에서 작성한 수사서류에 실명이 기재된 경우 직접 삭제 가능, 실명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가명처리 후 가명조서 작성 가능
- 수사 진행 상황의 파악
 - ※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에 문의 또는 '경찰사건조회: 정부24' 또는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

-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방문·전화 또는 온라인(‘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

※ 수사기관에서의 2차피해: 신고 및 고소 접수 기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비난, 가해자 두둔, 성적 불쾌감 유발 등,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경찰 조치 미이행 등

● 수사 종료

- 경찰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송치결정(불구속 또는 구속)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후에 수사중지결정을 합니다.
- 송치결정시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내용 및 담당 팀장의 연락처 등이 고소인(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 통지방식은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수사 종결 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소속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결과에 대한 문의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아두기〉

- 검찰송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함
※ 송치번호와 담당 검사 알아보기
- 법원송치: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함
※ 송치번호와 담당 검사 알아보기
- 불송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함
※ 이의신청 가능: 자유양식 또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 서식
불송치 결정 이유에 고소장의 내용,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됨
- 수사중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등의 사유로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중지함
※ 이의신청 가능: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자유양식 또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0호 서식)

3. 검찰수사단계에서의 지원

● 검찰수사절차

-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검사가 지정됩니다. 담당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의 기소, 보완수사요구, 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용어 설명〉

-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
기소가 결정되면 대부분 1~2개월 이내 공판(재판)이 진행됨
-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자체 종결하거나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또는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수사를 보완하여 그 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보고
- 불기소: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음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안됨, 각하 등
 -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미룸
 - 혐의없음
 - 범죄인정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증거 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 공소권 없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 각하
 -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명백히 해당할 때
 -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 한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음

● 검찰수사단계 지원

- 검찰단계 또한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 처벌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알아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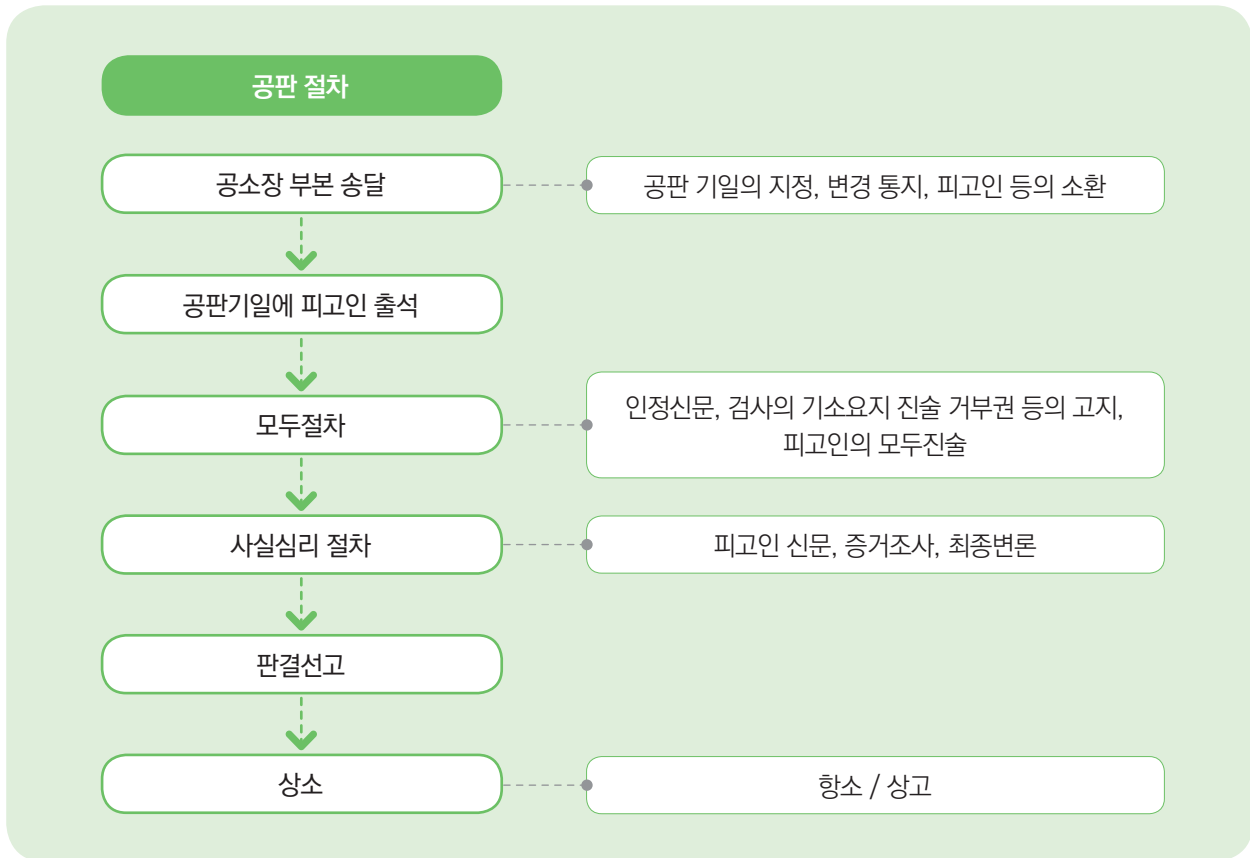
- 검찰수사 단계에서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및 추가 증거 제출
- 불기소 처분 시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으나 수사 경력자료로 기록됨
- 기소 결정: 피해자 재판 증언 준비
- 보완수사 결정: 피해자 또는 변호인을 통해 담당 경찰서 수사관에 연락하여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 불기소 결정 시에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가능
 - 1단계: 항고
 - 사건 재수사 신청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음
 - 2단계: 재항고
 - 항고가 기각되었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음
 - 3단계: 재정신청
 -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묻는 것.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 제출

〈용어 설명〉

- 의견서: 피해자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상담가의 의견을 씀
- 진정서: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주장
- 탄원서: 피의자(가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또는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

4. 재판단계에서의 지원⁸⁾

형사재판절차



- 재판은 3심제도로 이루어지며, 1심 지방법원, 2심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3심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소송관계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의견을 전하거나 재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조사가 끝나면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결심재판을 거친 뒤 2~3주 후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피고인 측이나 검사 측 각각 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기소하면 1~2개월 내 재판이 시작됩니다. 기소 후에 한 달을 전후하여 첫 재판기일이 잡히고,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거가 명확할 시 통상 1, 2회 정도에서 재판이 종결됩니다.

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과정 매뉴얼」 참고.

〈알아두기〉

※ 검사나 수사관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일시, 재판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여부, 출소 등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피해자나 목격자는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증언
- 증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 피해자의 경우 직접 항소하기 어려우므로 검사에게 항소하도록 요청
- 신뢰관계인 법정 동석 가능
- 아동·청소년 또는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와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음
- 사건 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검사를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제출 가능

〈판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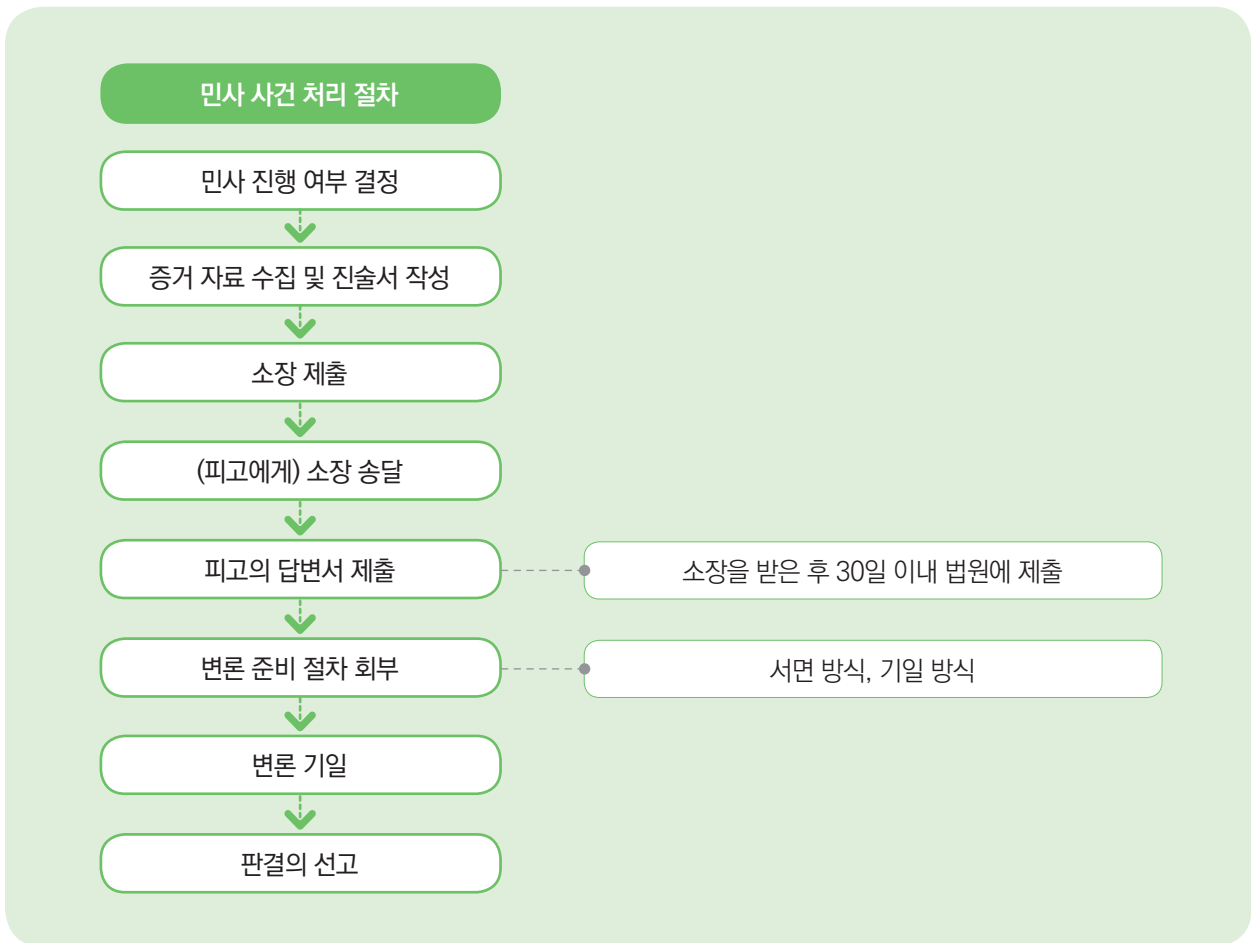
- 재판이 끝난 후 판결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된 상태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됨. 이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에게 '판결서 열람제한 신청' 가능

〈용어 설명〉

- 유죄판결: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실형선고,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판결
- 징역형: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 전과기록 남음
- 금고형: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음. 전과기록 남음
- 벌금형: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채 국가에 금전을 지불하는 것. 전과기록 남음
- 집행유예: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음
-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일정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기소권 소멸)된 것으로 간주
- 무죄판결: 유죄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때 선고
- 면소판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범죄 후 법령이 수정되어 형이 폐지된 때 등 현실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선고
- 공소기각: 형식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공소취소, 피고인 사망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
- 배상명령: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법원이 배상을 명령.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배상명령 결정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5. 민사소송⁹⁾



- 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로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스톱킹·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로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진행되며, 형사소송과 동시에 혹은 결과가 확정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담가는 각종 서류와 증거를 잘 챙겨 피해자가 원하는 바가 변호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9)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외(2014).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안내서」 참고.

〈알아두기〉

① 소장접수

-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밝힘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폭력 피해, 연락의 흔적, 형사재판 판결문 등)를 제출
- 법원이 제출된 소장을 심사한 후 형식적 문제가 없으면 가해자(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보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함

② 변론준비

- 가해자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반박, 가능한 모든 주장에 대한 증거와 증인을 언급함
- 소장에 첨부하지 못한 증거 추가제출, 수사, 재판기록은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하여 증거로 제출
- 서면을 통해 피해자(원고)와 가해자(피고)가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보충하는데 쟁점이 복잡한 경우 준비기일(판사, 원고, 피고가 대면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을 통해 쟁점을 정리

③ 변론

- 변론 준비절차의 주장을 제출하며 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짐

④ 판결선고

- 판결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 가능

● 관련기관 및 정보

기관	관련 업무	연락처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 보호조치 및 법령 제공 고소장 등 수사단계 필요 서식 제공	https://www.polic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명조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신청서 등 필요 서식 제공 관련 법령, 판례 제공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재판 관련 각종 서식, 재판 결과 등 제공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경찰 및 검찰조사, 법원 사건과정 및 결과 조회	https://www.kics.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https://www.klac.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s://www.legalaid.or.kr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s://crisis-center.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s://lawhome.or.kr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선변호인 제도 신청	1301
해바라기센터		〈부록1. 유관기관〉 참조
법률홈닥터	법률상담	https://lawhomedoctor.moj.go.kr

2. 의료 및 전문상담 지원

- 상해, 검진, 정신과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관한 비용 지원 및 기관 연계
- 시군 지자체, 기관마다 지원 범위 및 비용 기준이 다소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 의료지원은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상해, 검진, 정신과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관한 비용 지원 및 해당 기관으로의 연계 등을 포함합니다.
-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의료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진찰 또는 치료를 권하거나 관련기관을 안내해야 합니다.

◎ 의료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 예산 및 배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기관에 따라 지원 범위 및 비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기관 또는 연계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기준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지원 범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일반·상해진단서 발급 비용
-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
- 임신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진료비 등

※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의료 지원시 주의점〉

- 진료 및 치료시 피해자의 동의 필수
- 진단서 및 기타 의료적 평가 확보: 스톱킹·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진료기록, 진단서 등은 의료지원의 증빙자료일 뿐 아니라 폭력 피해의 법적 증거가 됨
- 성폭력 피해가 있을 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가능성 고려
 - 피해 여성이 피해를 당한 후 5일 이내에 병원을 방문했다면, 가임기 여부를 확인한 후 응급피임약 제공받아야 함
 - 5일 이후 방문인 경우 다음 생리 예정일 주간 확인 후 병원 방문하여 임신 여부 확인
- 비밀준수 의무 및 피해자 정보보호
- 의료인에 의한 2차피해 방지(예, 진료와 관계 없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 데이트 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불신 등)

② 의료비 지원¹⁰⁾

- 의료비 지원은 스톱킹·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지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 의료비 지원의 대상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및 동거인이며, 스톱킹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성폭력 피해가 중첩된 경우 성폭력 의료비 기준에 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여성가족부, 2023).

-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진료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치료비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소견서 및 사례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진행
- 입원실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이 원칙이지만, 상급 병실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예, 아동·청소년 피해자, 심각한 외상 피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사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사용 가능
-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의약품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긴급하게 필요한 약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 가능
-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영양제, 배변주머니, 의료보조기 등은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지원 가능
- 한방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 해 본인 부담분만 지원 가능
- 입원하여 치료 중인 범죄피해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간병비 지원 가능(1개월, 심의 후 연장 가능)

10)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참고.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외 의료지원 제도(기관)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위기상황: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경찰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심리평가 및 상담을 통해 회복 지원
- 신청: 전국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또는 청문감사담당관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로 인해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공
- 의료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및 치료를 위한 부대비용(예, 의료보조기구, 치료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 신청: 1577-1295, 경찰·검찰을 통해 지원 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지역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신청: 해당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1577-0199

〈스마일센터〉

-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
-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전국 16개 지역에서 운영
- 신청: 경찰서(국번없이 182), 검찰청 (1577-2584),
전국 범죄피해자 구호전화(1577-1295)

②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지원

- 많은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다양한 전문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향상, 개인별 상황에 따른 삶의 방향 탐색 및 지원, 위기상황 파악 및 위기대처 능력 함양,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행동 및 기능의 회복 및 향상,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배양 등 다양합니다.
- 상담 후 피해자의 욕구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유형	프로그램 예시			
상담	• 개별심리상담 • 가족상담	• 약물·알코올상담 • 집단심리상담	• 의사소통·갈등해결 훈련	
교육	• 재피해예방 • 폭력에 대한 이해	• 성평등 인식 • 법률강좌	• 건강강좌 • 경제강좌	
동기부여	• 자존감 향상	• 직업탐색	• 자기경영	• 진로교육
정서프로그램	• 캠프(지역탐방 등) • 모래치료 • 명상·요가 • 원예치료 • 글쓰기치료	• 음악치료 • 웃음치료 • 문화체험 • 사이코·소시오드라마 프로그램 • 춤·동작치료	• 감수성 훈련 • 장점 강화훈련 • 미술치료 • 독서치료 • 연극치료	• 사물놀이 • 자기방어훈련

③ 관련기관 및 정보

기관	관련 정보	연락처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 개별 및 집단 치유프로그램 제공	https://kcvv.kcva.or.kr
스마일센터	강력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https://resmile.or.kr

※ 경기도 내 해바라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소 등 기타 기관은 <부록1. 유관기관>을
활용하세요.

3. 주거 및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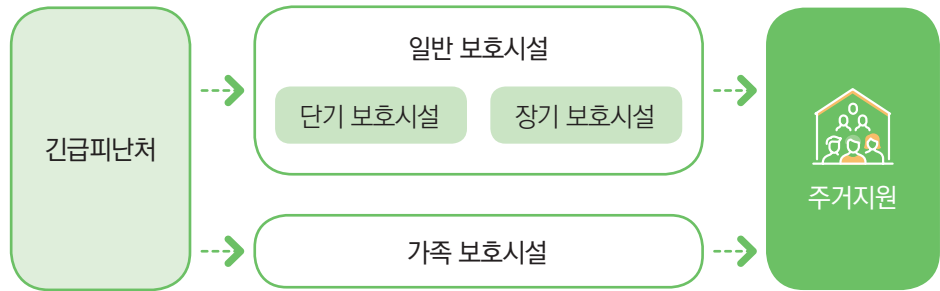
- 긴급피난처(3일 이내, 최대 30일)
- 임시숙소(3개월 이내, 2회 연장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2년 이내)
- 임대주택 등 지원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검찰청)
- 긴급복지 지원 제도(경기도형)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긴급대피 및 보호, 재활을 위해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이 가해자와의 분리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제도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긴급 및 장기 주거지원,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운영 방식 또는 이용규칙에 있어 사생활 보장이 충분치 않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독립된 형태의 긴급피난처 및 임시숙소가 마련될 예정(2024년)입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 경기권역 6채 내외 예정
- 3일 기준(최대 7일),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 경기권역 7채 예정
- 3개월 기준, 3개월씩 2회 연장 가능

※ 여성가족부의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용지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피난처 및 보호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세부운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을 준용합니다.

시설 유형	이용기간	지원내용
※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지원에 관해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을 준용(여성가족부,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용지침) ※ 입소 대상자는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 ※ 긴급피난처 및 보호시설은 위치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 시 해당 지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문의가 필요		
긴급피난처	3일 이내(최대 7일) -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	365일 24시간 임시보호 - 숙식지원 - 상담, 치료 - 임시숙소 내 안전 장비(112 비상벨, 스마트초인종 등) 설치 112·119 연계조치 및 수사·법률·의료·전문상담 등 연계
임시숙소	3개월 이내 3개월 1회 연장 가능 ※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임시숙소(24년 예정, 3개월 2회 연장 가능)	- 법률 및 의료지원 - 숙식제공 - 심리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교육, 취업정보 제공 - 심리치유프로그램 - 만13세 아동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의료비 지원 - 직업훈련비 - 생계비 - 퇴소 시 자립지원금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장기보호시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년 이내 - 시설 입소 후 6개월 이내에 미취업하는 경우 퇴소 조치 가능	
가족보호시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년 이내	

◎ 주거지원 상담

- 폭력 피해로 인해 일상이나 사회생활의 영위가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긴급피난처 또는 보호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시설 주거 지원을 진행합니다.

〈긴급피난처 등 임시숙소 지원 절차〉

-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 혹은 주거 지원의 필요가 있는지 판단
- 피해자의 거주지, 위험성, 긴급성, 이용기간, 필요한 부가 지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 연계
- 피해자의 동의 절차
- 입소시설의 유형과 최초 거주 기간, 연장기간 및 기한, 최대 거주 기간을 확인 및 주거 외 지원 서비스(식비,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구조, 자녀 지원 등) 안내
- 준비할 물품 등 안내
- 긴급피난처 등 임시숙소로 이동시 신변보호 안내 또는 지원
- 규칙 등 피해자 안전 및 시설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안내
- 필요시 장기보호시설로 연계
- 지속적 상담 및 모니터링

- 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시설 입소기준〉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경우(지자체장의 승인 필요)

〈보호시설 퇴소〉

- 입소자나 입소동의를 한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가능
- 보호시설장이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
- 보호목적의 달성이나 입소기간 만료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다른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시군구와 협의 후 가능)

② 시설 외 주거지원 신청

- 긴급피난처 및 임시숙소, 장기보호시설 등 시설입소가 아닌 주거지원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과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입주자 기준: 보호시설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
- 주택유형: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 지원대상: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피해 정도는 사망, 장애, 전치 5주 이상의 상해 단,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단순 강제추행 제외)

- 신청기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단, 가해자 소재 발견 또는 가해자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한 사유로 특별히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신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 기타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검찰청)〉

- 살인, 폭행, 성폭력 등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긴급복지 지원 제도(경기도형)〉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위기상황: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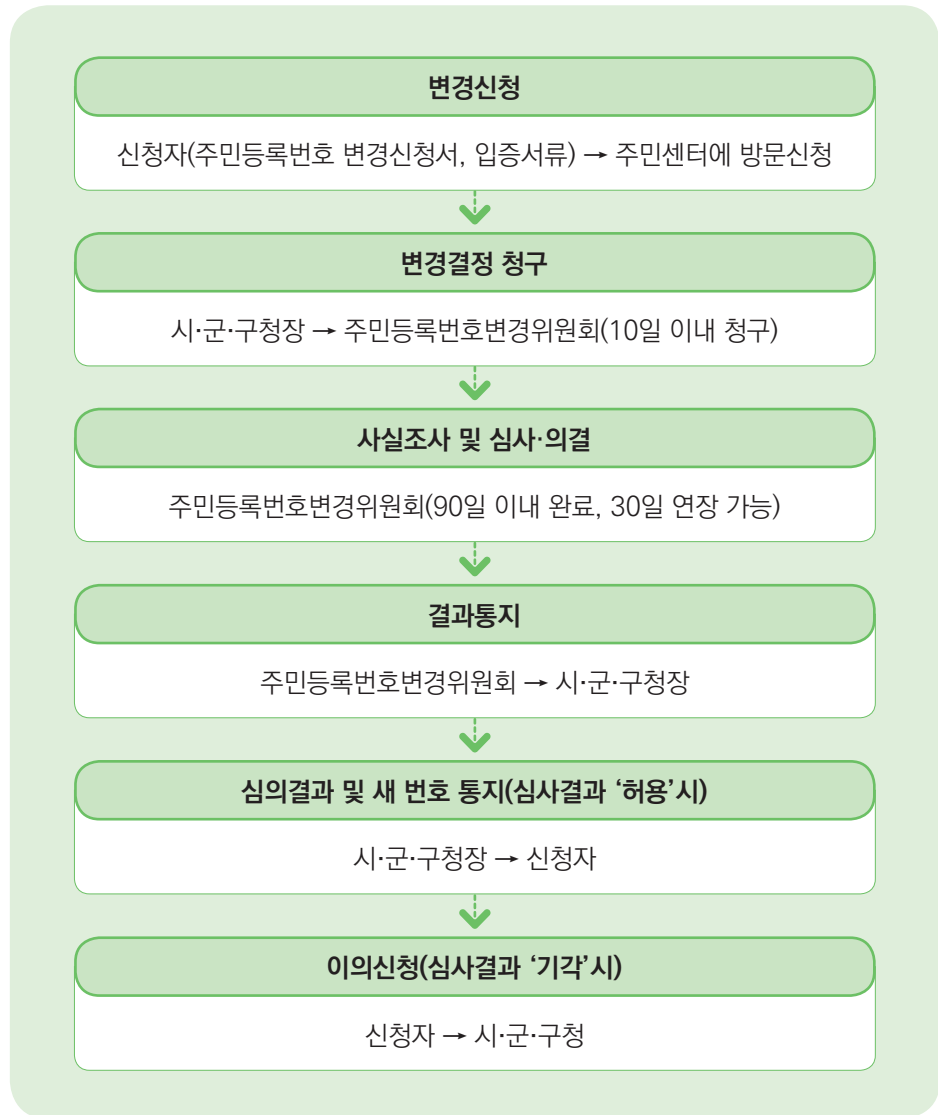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타 지원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제한

① 주민등록번호 변경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②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

-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 신청 절차>

신청방법 : 피해자가 직접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표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 피해 입증 서류 예시
 - 스톱킹 또는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피해자 지원기관)
 - 긴급피난처 또는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긴급피난처, 보호시설)
 - 진단서, 진료기록(병원)
 - 임시조치 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법원)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경찰), 고소 접수증, 고소장 사본
 - 사건결정결과 통지서(검찰)
 - 판결문, 공판기록

4

상담가·조력자로서의 자세

1. 전문적 인식과
사명감 갖기

- 인식 점검하기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하기

- 스토킹·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는

- ① 피해에 대한 대응(피해자 안전 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주거 및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하며
- ② 피해 회복을 조력(사례 관리, 모니터링)하고
- ③ 수사·법·복지체계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 ④ 궁극적으로 젠더폭력을 완화시키는 일입니다.

-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도·현실·관행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기 인식 점검

- 스토킹·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무의식적으로 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28~30쪽 참조).
- 객관적인 태도나 조화로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자칫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인식

- 피해자를 단지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법·가정폭력법·스토킹처벌법 등 젠더폭력 관련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젠더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와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상담가·조력자의 태도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 열심히 듣는다. • 피해자가 이야기하도록 권장한다. • 안정을 유지한다. •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대한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한다. • 피해자가 결정하도록 권장한다. • 따뜻하고 민감하게 대한다. • 피해자를 사람으로 대한다. •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나의 의견을 말해준다.	• 대화를 자르거나 막는다. • 육하원칙을 따져 묻는다. •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 문제를 이치로 설명한다. •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한다. • 피해자를 위해 결정을 내려준다. • 피해자를 동정한다. • 기계적으로 대한다. •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피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답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¹¹⁾

-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는 가해자로부터의 추적 및 보복 우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을 철저히 조심하여 다루주세요.
-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수 있는 학교, 학과, 성별, 고향, 친구 등 ‘식별 정보’를 포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의할 점〉

개인정보의 수집

-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
- 내담자의 동의를 받을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고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에 따르는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제공

-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시 정보주체인 내담자의 동의 필수
- 내담자의 동의를 받을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고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에 따르는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제공시 보호조치 준수사항을 포함하며, 파일 암호화, 보안메일, 등기우편 등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

11) 보건복지부(2000). 「가정폭력피해자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함
 -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암호화 기술 적용,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유출 방지조치, 보안프로그램
 - 물리적 조치: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USB 반출입 통제, 개인정보의 파기
 - 관리적 조치: 보호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 수립

- 상담의 내용은 비밀보장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보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비밀보장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2. 상담가 안전 지키기

상담가의 신체적·심리적 안전과 건강을 지켜요.

- 스톱·데이트 폭력피해에 대한 상담이 반복되면서 상담가는 내담자의 고통과 공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심리적 위기를 겪기도 하며, 빨리 소진이 되기도 합니다.
-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가의 안전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 노력과 기관 내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제도적 차원에서 위기 예방-대응-사후관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가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휴대폰을 활용한 긴급신고, 위치추적, 2인1조 이동 의무 등 상담가의 안전계획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가를 위한 물리적 안전환경 예시〉

- CCTV, 녹취전화, 비상벨(무다이얼링), 비상전화(경찰서, 소방서, 보안업체 등), 출입문 잠금장치(비밀번호 입력, 지문 인식 방식 등), 사무기기(캐비닛, 서랍 등) 잠금장치, 호신장비(호루라기,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 대피장비(완강기, 하강기 등), 대피공간(비상구, 비상 대피실 등), 폭력 및 비상 상황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등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부록 1

유관기관

1. 경기도 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2. 경기 남·북부 경찰청 및 경찰서
3. 전국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4. 외국인 지원 연계기관

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1

경기도 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1. 여성긴급전화 1366

연번	지역	주소	연락처
1	경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가톨릭복지회관 3층	031-204-1366
2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4-1	031-873-1362

2. 해바라기센터

연번	구분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1	위기(위기상황 대처 중점) (24시간, 경찰배치)	경기북동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74-3117
2		경기서부	단원병원	031-364-8117
3	통합(위기상황 지원 및 재피해 예방) (24시간, 심리치료, 경찰배치)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위기) 031-216-1117 (지속) 031-215-1117
4		경기중부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032-651-1375
5		경기북서부	명지병원	031-816-1375 (응급) 031-816-1374
6	아동(19세 미만) (주간근무, 경찰배치)	경기	분당차병원	031-708-1375

3.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연번	지역	주소	연락처
1	부천	부천시청 별관(부천시 중동 힐스테이트 2층)	032-625-6960
2	하남	하남시 신장동 청사 본관(2층)	031-5182-1197
3	김포	사우중로 49 김포시청 별관	031-980-5587
4	안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청사 2별관(2층)	031-369-1775~6
5	파주	파주시 금촌동 770-1 덕우빌딩 4층	031-640-8717
6	화성	동탄 공동대응팀(동탄7동 어울림센터)	031-378-5937
		서부 공동대응팀(남양읍 모두누리센터)	031-350-4357
7	과천	개소준비중	
8	오산	개소준비중	

4. 성폭력상담소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이용시간
1	전국	여성의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365일 24시간
2	경기도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국번없이) 1544-9112 031cut@gwff.kr 카카오톡: @031cut	월~금 09:00~18:00 온라인 상담 상시 운영
3	군포	군포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31-396-0236 kpsangdam@daum.net	월~금 09:00~18:00
4	고양	고양 성폭력상담소	031-907-1368 9071368@naver.com	월~금 09:00~18:00
5	고양	한마음가족상담센터	031-979-1367 eran11@daum.net	월~금 09:00~18:00 주말/야간 접수 가능
6	광주	(사)씨알 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7-7031(7032) ssialwomen@daum.net	월~금 09:00~18:00
7	광명	(사)광명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2-2616-2545	월~금 09:00~17:00
8	김포	김포 성폭력상담소	031-984-1367 gwp1367@naver.com	월~금 09:00~18:00 주말/야간 탄력 운영
9	김포	젠더기반폭력상담소	031-997-1395(1399) gpgender@naver.com	월~금 09:00~18:00 주말/야간 탄력 운영
10	남양주	남양주 가정과성상담소	031-558-1366 hlchun@hanmail.net	월~금 09:00~18:00 주말/야간 접수 가능
11	동두천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031-867-3100 ddcsvc3@hanmail.net	월~금 09:00~18:00
12	부천	(사)부천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032-328-9711 bw hotline@hanmail.net	월~금 09:00~18:00
13	부천	부천 청소년성폭력상담소	032-655-1366 qhd1977@naver.com	월~금 10:00~17:00 주말/야간 사전조율시 가능
14	성남	경원 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755-2526 withus3663@hanmail.net	월~금 09:00~18:00
15	성남	성남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31-751-2050 snwhl@naver.com	월~금 09:30~17:30
16	수원	수원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31-224-6888 suwonhotline@gmail.com	월~금 09:30~17:30
17	수원	수원 청소년성인권센터 부설 상담소	031-251-1517 suwon2511517@daum.net	월~금 09:00~17:00
18	시흥	시흥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31-496-9390 shwhl@hanmail.net	월~금 09:00~17:00
19	안산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031-413-9414 anycounsel@hanmail.net	월~금 09:00~18:00
20	안양	안양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31-442-5385 awhl96@hanmail.net	월~금 09:00~18:00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이용시간
21	안양	새남 심리상담연구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381-8540	월~금 09:00~18:00
22	양주	양주 성폭력상담소	031-864-7546 jubilee7545@daum.net	월~금 09:00~18:00
23	연천	연천 행복돌상담소	031-832-1315 happy8321315@hanmail.net	월~금 09:00~18:00
24	용인	용인 성폭력상담소	031-281-1367 ywcccc@hanmail.net	월~금 09:00~18:00
25	의왕	계원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031-462-1366 0173169191@hanmail.net	상시운영
26	의정부	의정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840-9203 daprc@hanmail.net	월~금 09:00~18:00
27	이천	이천 가정성상담소	031-634-1366 2000gss@naver.com	월~금 09:00~18:00 주말/야간 전화상담 가능
28	파주	성폭력상담소 함께	031-946-0366(상담) pajusangdam@hanmail.net	월~금 09:00~18:00
29	평택	(사)원선 복지회 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031-618-1366 pt1366@hanmail.net	월~금 09:00~18:00
30	포천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031-542-3171 pchsvc@hanmail.net	월~금 09:00~18:00
31	하남	하남 성폭력상담소	031-796-1213 hanam1274@daum.net	월~금 09:00~18:00
32	화성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31-378-5691	월~금 09:00~18:00 토 10:00~16:00(위기상담)

5. 가정폭력상담소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1	전국	여성의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2	군포	21 가정사랑 훈련학교	031-398-1366
3	고양	고양 YWCA가족사랑상담소	031-921-1366
4	광명	(사)광명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2-2060-2545
5	광주	광주 열린상담소	031-766-3395
6	구리	구리 가정폭력상담소	031-569-0101
7	구리	(사)가화 부설 가족상담센터	031-551-9976
8	김포	김포 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031-989-0136
9	남양주	남양주 한마음가족상담소	031-574-7189
10	남양주	남양주 가족상담센터	031-595-1238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11	부천	부천 가정폭력상담소	032-667-2314
12	부천	행복 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13	성남	경기 가정상담소 부설 성남 가정폭력상담소	031-707-6661
14	성남	굿패밀리 상담센터	031-733-0675
15	성남	성남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31-751-2050
16	수원	수원 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031-232-6888
17	수원	(사)경기 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031-243-4600
18	시흥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31-496-9390
19	시흥	시흥 가정폭력상담소	031-404-8007
20	안산	(사)시민참여복지회 부설 경기 가정폭력상담소	031-419-1366
21	안성	안성 가정행복상담센터	031-671-9191
22	안양	안양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31-442-5385
23	안양	안양 YWCA 가정폭력상담소	031-457-0628
24	양주	양주 가정폭력상담소	031-864-7545
25	양평	양평 사랑 가정폭력상담소	031-775-4983
26	여주	여주 가정폭력상담소	031-885-7651
27	연천	연천 가정폭력상담소	031-835-5219
28	오산	오산 느루 가정폭력상담소	031-376-4326
29	용인	용인 가정상담센터	031-286-1758
30	용인	(사)해피패밀리 가족상담센터	031-281-8891
31	용인	용인동부 가족상담센터	031-337-1366
32	의왕	행가래로 의왕 가정·성상담소	031-459-1311
33	의정부	경기북부 가정문제상담소	031-876-7544
34	이천	이천 가정성상담소	031-638-7200
35	평택	평택 가정상담센터	031-667-5977
36	포천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031-542-3171
37	포천	(사)해피패밀리 포천지부 희망가족상담소	031-531-2821
38	하남	(사)정해복지 부설 하남 가정폭력상담소	031-794-4111
39	화성	화성 가정상담소	031-298-2117
40	화성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31-378-5691

6.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1	수원	오늘	070-8915-0829
2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031-244-7774
3	성남	위드어스	031-747-0117
4	평택	평택여성인권센터 품	031-651-6100
5	의정부	두레방	031-841-2609
6	파주	여성인권센터 쉬고	031-948-8030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폭력 피해 지원)

연번	기관명	연락처
1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2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3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740-1175
4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5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6	용인시 가족센터(다문화)	031-323-7133
7	화성시 가족센터(다문화)	031-267-8786
8	남양주시 가족센터(다문화)	031-553-8211
9	평택시 가족센터(다문화)	031-615-3959
10	안양시 가족센터(다문화)	031-8045-5572
11	시흥시 가족센터(다문화)	031-319-7997
12	김포시 가족센터(다문화)	031-996-5920
13	파주시 가족센터(다문화)	031-949-9164
14	의정부시 가족센터(다문화)	031-878-7880
15	광주시 가족센터(다문화)	031-798-7141
16	광명시 가족센터(다문화)	02-6265-1366
17	하남시 가족센터(다문화)	031-793-2993
18	군포시 가족센터(다문화)	031-395-1811
19	오산시 가족센터(다문화)	031-372-1335
20	양주시 가족센터(다문화)	031-848-5622
21	이천시 가족센터(다문화)	031-631-2260
22	구리시 가족센터(다문화)	031-556-4139
23	안성시가족센터(다문화)	031-677-7191

연번	기관명	연락처
24	의왕시 가족센터(다문화)	031-429-4782
25	포천시 가족센터(다문화)	031-532-2065
26	여주시 가족센터(다문화)	031-886-0327
27	양평군 가족센터(다문화)	031-775-5952
28	동두천시 가족센터(다문화)	031-863-3822
29	과천시 가족센터(다문화)	02-503-0070
30	가평군 가족센터(다문화)	070-7510-5876
31	연천군 가족센터(다문화)	031-835-0093

8.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연번	지역	연락처
1	가평	031-582-9902 gp9902@naver.com
2	고양	031-969-4041 gofc2006@hanmail.net
3	과천	02-503-0070 gchfsc@familynet.or.kr
4	광명	02-6265-1366 gmfc79@naver.com
5	광주	031-798-7138 https://gggj.familynet.or.kr
6	구리	031-556-3873 https://guri.familynet.or.kr
7	군포	031-392-1811 gunpomfc@hanmail.net
8	김포	031-996-5920 gimpo@familynet.or.kr
9	남양주	031-556-8212 nyj8211@hanmail.net
10	동두천	070-7437-3813 ddcgd@naver.com
11	부천	070-4457-5469 bucheon@familynet.or.kr
12	성남 (북정)	031-755-9327
	성남 (신흥)	031-754-9327 snfcworking@hanmail.net
13	수원	031-754-9327 suwon@familynet.or.kr

연번	지역	연락처
14	시흥	031-245-1310 shfc@shfc.kr
15	안산	031-319-7997 ansan@familynet.or.kr
16	안성	031-501-0033 6777191@hanmail.net
17	안양	031-677-7191 anyang@familynet.or.kr
18	양주	031-8045-5572 yjmfc@hanmail.net
19	양평	031-858-5681 ypmc21@hanmail.net
20	여주	031-775-5951 yjdahunhwa@naver.com
21	연천	031-886-0321 ycfc10@daum.net
22	오산	031-835-0093 happycenter@empas.com
23	용인	031-378-9761 yongincenter@hanmail.net
24	의왕	031-323-7135 uiwang@familynet.or.kr
25	의정부	031-429-8931 ujbfc2@naver.com
26	이천	031-878-7117 2000mfsc@daum.net
27	파주	031-637-5516 pmfsc@hanmail.net
28	평택	031-949-9161 https://ptfc.familynet.or.kr
29	포천	031-615-3952 pcfc7100@naver.com
30	하남	031-532-2070 hanamfc@hanmail.net
31	화성	070-4128-3341 hsfc1@familynet.or.kr

9.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1	경기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031-212-0435
2	가평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1-581-8881
3	고양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968-2333
4	과천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2-504-4440
5	광명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02-897-7786
6	광주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762-8728
7	구리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523-8672
8	군포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61-1771
9	김포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998-4005
10	남양주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592-5891
11	동두천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63-3632
12	부천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2-654-4024
13	성남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780-7000
14	수원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031-247-0888
15	수원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031-253-5737
16	시흥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대야본소 031-316-6661
17			정왕본소 031-319-3419
18			목감본소 031-482-3419
19	안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11-7573
20	안성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057-8356
21	안양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69-2989
22	양주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40-7320
23	양평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1-771-3521
24	여주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86-3435
25	연천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1-832-8106
26	오산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374-8680
27	용인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286-0949
28	의왕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58-0682
29	의정부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38-4181
30	이천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637-2330
31	파주 파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본소 031-942-2117
32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본소 031-945-2117
33	평택 평택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평택본소 031-658-9818
34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송탄지소 031-8024-7226
35	포천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532-1655
36	하남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793-6552
37	화성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352-0175

10. 자살예방센터

연번	기관명	연락처
1	경기도자살예방센터	031-212-0437
2	가평군자살예방센터	031-581-8881
3	고양시자살예방센터	031-927-9275
4	과천시자살예방센터	02-504-4440
5	광명시자살예방센터	02-2618-8255
6	광주시자살예방센터	031-762-8728
7	구리시자살예방센터	031-523-8644
8	군포시자살예방센터	031-360-1779
9	김포시자살예방센터	031-998-4005
10	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	031-592-5891
11	동두천시자살예방센터	031-865-3632
12	부천시자살예방센터	032-654-4024
13	성남시자살예방센터	031-780-7001
14	수원시자살예방센터	031-247-3279
15	시흥시자살예방센터	031-316-6664
16	안산시자살예방센터	031-418-0123
17	안성시자살예방센터	031-8057-8356
18	안양시자살예방센터	031-469-0207
19	양주시자살예방센터	031-840-7320
20	양평군자살예방센터	031-773-1331
21	여주시자살예방센터	031-886-3437
22	연천군자살예방센터	031-835-8106
23	오산시자살예방센터	031-374-8680
24	용인시자살예방센터	031-286-0949
25	의왕시자살예방센터	031-458-0682
26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	031-894-8089
27	이천시자살예방센터	031-637-2330
28	파주시자살예방센터	031-942-2117
29	평택시자살예방센터	031-658-9818
30	포천시자살예방센터	031-532-1670
31	하남시자살예방센터	031-794-6508
32	화성시자살예방센터	031-352-0175

2

경기 남·북부 경찰청 및 경찰서

1. 경기 남·북부청 산하 경찰서

남부 경찰청	북부 경찰청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2. 경기남부 경찰청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부서)

연번	기관명	연락처
1	경기남부경찰청	031-888-3340
2	과천경찰서	02-2149-4333
3	광명경찰서	02-2093-0338
4	광주경찰서	031-790-7327
5	군포경찰서	031-390-9322
6	김포경찰서	031-950-2337
7	부천소사경찰서	032-456-0284
8	부천오정경찰서	032-670-2348
9	부천원미경찰서	032-680-7303
10	분당경찰서	031-786-5338
11	성남수정경찰서	031-750-4249
12	성남중원경찰서	031-8036-5123
13	수원남부경찰서	031-899-0325
14	수원서부경찰서	031-8012-0218
15	수원중부경찰서	031-250-1089
16	시흥경찰서	031-430-8411
17	안산단원경찰서	031-8040-0138
18	안산상록경찰서	031-8040-2155
19	안성경찰서	031-8046-0376
20	안양동안경찰서	031-478-7348

연번	기관명	연락처
21	안양만안경찰서	031-8041-6339
22	양평경찰서	031-770-9137
23	여주경찰서	031-887-0179
24	오산경찰서	031-371-8145
25	용인동부경찰서	031-260-0577
26	용인서부경찰서	031-8021-8279
27	의왕경찰서	031-8086-0228
28	이천경찰서	031-645-0148
29	평택경찰서	031-8053-0148
30	하남경찰서	031-790-0218
31	화성동탄경찰서	031-639-1386
32	화성서부경찰서	031-379-9235

3. 경기북부 경찰청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부서)

연번	기관명	연락처
1	경기북부경찰청	031-961-2745
2	가평경찰서	031-580-1312
3	고양경찰서	031-930-5338
4	일산동부경찰서	031-929-9338
5	일산서부경찰서	031-839-7135
6	구리경찰서	031-560-9312
7	남양주남부경찰서	031-579-8313
8	남양주북부경찰서	031-869-6315
9	동두천경찰서	031-869-0396
10	양주경찰서	031-869-9239
11	연천경찰서	031-839-5315
12	의정부경찰서	031-849-3399
13	파주경찰서	031-956-5338
14	포천경찰서	031-539-8316

3

전국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1. 불법영상을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1	경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
2	경남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055-1366
3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054-284-0404
4	광주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62-529-0383
5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053-471-6484
6	대전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함	042-257-3534
7	부산	이젠센터	051-802-2082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051-816-1366
8	서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9	인천	십대여성인권센터	02-6348-1318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032-511-3141
10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063-236-0151
11	제주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064-748-3040
12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041-1366
13	충북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043-257-8297

2. 기타 주요 연계 기관

연번	기관명	연락처	주요업무
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아동학대 상담 및 긴급보호
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3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24시간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상담, 법률상담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별 다름)	상담, 통번역, 자녀교육지원, 취업·창업지원 등
5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보호시설	(지역별 다름)	피해 이주여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연번	기관명	연락처	주요업무
6	청소년전화 1388	1388	청소년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고민상담
7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
8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9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10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02-537-1295	범죄피해자 경제적·법률·주거 지원
11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 서비스 지원
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복지서비스 상담(긴급지원비용)
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별 다름)	알코올, 인터넷(스마트폰), 도박, 마약 등 중독문제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3. 경기도 외 젠더폭력 피해 상담소(22년 기준)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1	서울 (20)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2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3		휴샘통합상담센터	02-2664-1366
4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02-2658-1366
5		이레성폭력상담소	02-3281-1366
6		가족과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070-8128-1366
7		벤티성가족상담센터	02-896-0401
8		꿈과희망상담센터	070-7503-1366
9		천주교성폭력상담소	02-825-1272
10		(사)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02-7337-11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12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02-739-8858
13		서초성폭력상담소	02-599-7606
14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1704
15		북한이탈여성 성폭력피해상담소	02-2651-1366
16		꿈터성폭력상담소	02-6083-4971
17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2-3675-4465
18		(사)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00
19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02-338-8043
20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02-902-3356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21	부산 (6)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051-624-5521
22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051-817-4344
23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051-558-8833
24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051-753-1377
25		(사)기장열린상담소	051-531-1366
26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051-583-7735
27	대구 (4)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053-566-1900
28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053-471-6483
29		대구여성통합상담소	053-745-4502
30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053-637-6057
31	인천 (5)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032-451-4093
32		(사)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032-885-5532
33		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2-424-1366
34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2-506-5479
35		(사)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032-865-1365
36		서인천가족상담소	032-564-1366
37	광주 (7)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62-521-1360
38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062-673-1366
39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2-654-1366
40		광주여성인권상담소	062-363-0487
41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062-672-8282
42		어등성폭력상담소	062-946-8004
43		참사랑성폭력상담소	062-954-4236
44	대전 (5)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2-223-8866
45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2-637-1366
46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042-254-3038
47		위드유성 성인권 상담센터	042-361-1004
48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042-257-3534
49	울산 (4)	울산성폭력상담소	052-245-1366
50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052-246-1368
51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052-267-1366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052-252-6778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52	세종 (2)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044-862-9191
53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044-850-3091
54	강원 (9)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033-375-1366
55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033-563-8666
56		속초성폭력상담소	033-637-1988
57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033-535-4943
58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033-257-4687
59		원주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033-765-1366
60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033-652-9556
61		삼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033-575-1366
62		행복만들기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033-344-1366
63	충북 (8)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043-252-0966
64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043-263-2000
65		제천성폭력상담소	043-653-1331
66		충주성폭력상담소	043-845-1366
67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3-224-9414
68		영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043-743-1366
69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043-268-3007
70		단양한스심리상담센터	043-422-3004
71	충남 (19)	(사)충남성폭력상담소	041-564-0026
72		사)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041-561-0306
73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1-592-6500
74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041-852-1950
75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041-541-1514
76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041-541-0119
77		계룡시성폭력상담소	042-551-7795
78		금산성폭력상담센터	041-752-9911
79		부여성폭력상담소	041-837-1366
80		서천군성폭력상담소	041-956-1377
81		예산성폭력상담소	041-335-1311
82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041-675-9536
83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041-936-7941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84	충남 (19)	아산가정성상담지원센터	041-546-9191
85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041-354-2366
86		당진시 폭력예방 상담소	041-353-8577
87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041-943-1366
88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041-631-3939
89		금산성가족통합상담소	041-450-7366
90	전북 (7)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063-236-0152
91		군산성폭력상담소	063-442-1570
92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063-537-1366
93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063-546-8366
94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3-223-3015
95		익산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3-834-1366
96		남원YWCA통합상담소	063-625-1318
97	전남 (9)	여수성폭력상담소	061-666-4001
98		전남성폭력상담소	061-753-1366
99		나주여성상담센터	061-332-1366
100		담양인권지원상담소	061-381-1366
101		해남성폭력상담소	061-533-9181
102		무안여성상담센터	061-281-1360
103		함평보두마상담센터	061-324-1388
104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1-283-4767
105		목포여성상담센터	061-285-1366
106	경북 (11)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054-278-4330
107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054-777-1520
108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4-843-1366
109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4-443-1366
110		구미여성종합상담소	054-463-1386
111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054-534-9996
112		문경열린종합상담소	054-555-8207
113		경산로댐성폭력상담소	053-853-5276
114		새경산성폭력상담소	053-814-1318
115		(사)칠곡종합상담센터	054-973-8290
116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054-284-0404

연번	지역	기관명	연락처
117	경남 (15)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055-283-8322
118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055-244-8400
119		진해성폭력상담소	055-546-8322
120		진주성폭력상담소	055-747-1366
121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055-745-1366
122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055-648-2070
123		김해성폭력상담소	055-329-6453
124		양산성가족상담소	055-366-6676
125		창녕성건강가정 상담소	055-521-1366
126		하동성가족상담소	055-884-1360
127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055-944-1828
128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5-241-5041
129		밀양시성가족상담소	055-391-1366
130		함안성가족상담소	055-587-1367
131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055-682-0361
132	제주 (4)	제주YWCA통합상담소	064-748-3040
133		제주여성상담소	064-756-4008
134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064-753-4982
135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064-732-3279

4

외국인 지원 연계기관

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연번	연락처	주요업무	운영시간
1	031-492-9347 gmhr@gmhr.or.kr	젠더·인종 차별 및 혐오 상담	월~금, 09:00~18:00

2. 다누리콜센터

연번	지역	주요업무	연락처 및 운영시간
1	중앙	이주여성 통역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및 연계	1577-1366 365일, 24시간
2	경기수원		031-257-1841 월~금, 09:00~18:00

3.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노동부, 18개 언어)

부처	연락처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상담센터	1577-0071 + '해당언어국가번호' + '*'	<table><tr><th colspan="8">1577-0071 + '해당언어국가번호' + '*'</th></tr><tr><td>1</td><td>한국어</td><td>2</td><td>중국어</td><td>3</td><td>베트남어</td><td>4</td><td>따갈로그어 (필리핀)</td></tr><tr><td>5</td><td>영어</td><td>6</td><td>태국어</td><td>7</td><td>인도네시아어</td><td>8</td><td>싱할라어 (스리랑카)</td></tr><tr><td>9</td><td>몽골어</td><td>10</td><td>우즈베크어</td><td>11</td><td>크메르어 (캄보디아)</td><td>12</td><td>벵골어 (방글라데시)</td></tr><tr><td>13</td><td>우르드어 (파키스탄)</td><td>14</td><td>네팔어</td><td>15</td><td>미얀마어</td><td>16</td><td>키르기즈스탄어</td></tr><tr><td>17</td><td>동티모르어</td><td>18</td><td>라오스어</td><td></td><td></td><td></td><td></td></tr></table>	1577-0071 + '해당언어국가번호' + '*'								1	한국어	2	중국어	3	베트남어	4	따갈로그어 (필리핀)	5	영어	6	태국어	7	인도네시아어	8	싱할라어 (스리랑카)	9	몽골어	10	우즈베크어	11	크메르어 (캄보디아)	12	벵골어 (방글라데시)	13	우르드어 (파키스탄)	14	네팔어	15	미얀마어	16	키르기즈스탄어	17	동티모르어	18	라오스어				
1577-0071 + '해당언어국가번호' + '*'																																																		
1	한국어	2	중국어	3	베트남어	4	따갈로그어 (필리핀)																																											
5	영어	6	태국어	7	인도네시아어	8	싱할라어 (스리랑카)																																											
9	몽골어	10	우즈베크어	11	크메르어 (캄보디아)	12	벵골어 (방글라데시)																																											
13	우르드어 (파키스탄)	14	네팔어	15	미얀마어	16	키르기즈스탄어																																											
17	동티모르어	18	라오스어																																															
법무부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1345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독일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거점센터 9개소)

연번	기관명	연락처 및 운영시간	상담 가능 언어
1	한국센터	02-6900-8000 (일~목, 09:00~18:00)	중국어, 스리랑카어, 파키스탄어, 몽골어 등
2	의정부센터	0314-838-9111 (일~목, 09:00~18:00)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3	김해센터	055-338-2727 (일~목, 09:00~18:00)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4	창원센터	055-253-5270 (일~목, 09:00~18:00)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5	인천센터	032-431-4545 (일~화, 목~금, 09:00~18:00)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우즈베키스탄어, 필리핀어 등
6	대구센터	053-654-9700 (일~화, 목~금, 09:00~18:00)	중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등
7	천안센터	041-411-7000 (일~금, 09:00~18:00)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등
8	광주센터	062-946-1199 (일~목, 09:00~18:00)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등
9	양산센터	055-912-0255 (일~목, 09:00~18:00)	베트남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등

5. 외국인 복지센터

연번	기관명	연락처	통역가능언어
1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베트남어, 중국어 등
2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	031-337-3057	중국어 등
3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031-754-7070	캄보디아어 등
4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필리핀어 등
5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44-7111 031-481-3301	네팔어, 러시아어 등
6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0341-594-5821	중국어, 몽골어 등
7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2-65-0664	베트남어 등
8	평택시 외국인복지센터	031-652-8855	중국어, 베트남어 등
9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베트남어 등
10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인도네시아어 등
11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031-885-8080	우즈베키스탄어 등

**스토킹·
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경기도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부록 2

활용서식

1. 접수 및 상담
2. 서비스 지원

경기도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1

접수 및 상담

서식1. 스톱킹·데이트폭력 초기상담 기록지

(앞면)

상담번호			상담가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방법		☐ 전화 ☐ 내방 ☐ 동행 ☐ 사이버 ☐ 기타()		
상담유형		☐ 피해상담 ☐ 단순상담 ☐ 기타()		
내담자 (의뢰인)	이름		성별	☐ 여성 ☐ 남성 ☐ 기타
	나이		주소지	
	신청인	☐ 피해자 본인 ☐ 법적대리인 ☐ 기관연계() ☐ 기타()		
	연락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대상자)	이름		성별	☐ 여성 ☐ 남성 ☐ 기타
	현재연령		피해연령	
	연락처		주소지	
	직업		장애 유무	☐ 무 ☐ 유 ☐ 추정
	상담경험	☐ 무 ☐ 유 ☐ 모름		
	주피해유형 ※ 피해 중첩시 모두 체크	☐ 데이트폭력 ☐ 스톱킹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디지털성폭력 ☐ 성상담 ☐ 기타()		
	스톱킹·데이트폭력 상세유형 ※ 피해 중첩시 모두 체크	☐ 물리적 스톱킹 ☐ 매체이용 스톱킹 ☐ 온라인스톱킹 ☐ 언어·정서적 폭력 ☐ 행동통제 ☐ 신체적 폭력 ☐ 성폭력 ☐ 경제적폭력 ☐ 기타()		
	피해자-가해자 관계	☐ 연인 ☐ 전연인 ☐ 배우자 ☐ 전배우자 ☐ 가까운 지인 ☐ 직장·학교에서의 지인 ☐ 얼굴만 아는 정도 ☐ 대면한 적은 없는 지인(채팅, 게임 등) ☐ 모르는 사람 ☐ 기타()		
사건진행현황	신고·고소	☐ 112 신고 ☐ 고소(변호인 없음) ☐ 고소(국선변호인) ☐ 고소(사선변호인)		
	보호조치	☐ 스톱킹행위 응급조치 ☐ 스톱킹범죄 긴급응급조치 ☐ 스톱킹범죄 잠정조치 ☐ 범죄피해자보호조치(스마트워치 등) ☐ 기타()		

(뒷면)

상담내용	
상담자 의견 (계획)	

1. 스톱킹·데이트폭력 바로 알기
2. 피해자 지원 길잡이
부록1. 유관기관
부록2. 활용사식
부록3. 스톱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서식2. <피해상당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신청자명		상담시 사용한 별칭	※ 실명과 동일할 시 미작성
신청자 (내담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연락처	
	최초 상담일자	※ 최초 상담일자, 정확히 모를 경우 대략적인 시기 기입	발급 신청일	
신청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자명		피해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상담일자	※ 최초 상담일자, 정확히 모를 경우 대략적인 시기 기입	발급 신청일	
제출기관 관련사항	제출기관명	※ 정확한 제출기관명 기입	제출(마감)일	
	담당자	※ 필요시 소통할 수 있는 제출기관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발급 용도	☐ 의료비 신청 ☐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 민·형사상 증거서류 제출 ☐ 기타(제출기관: 용도:) ☐ 무료법률지원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발급 방법	☐ 우편(주소:) ☐ 팩스(팩스번호:) ☐ 기타(사유: / 방법:)			

[안내사항]

※ 피해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기관으로 송부할 경우, 제출기관명, 담당자 등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피해상담사실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서식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가해자 인적사항	성 명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유형	☐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기간	
피해 내용				
입증방법 (첨부)	1. 경·검찰, 법원의 증명서 및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등) 2. 병원 진단서, 사진, 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대화녹음, 목격자 진술서 3. 기타 피해사실 입증이 가능한 자료			
상기 ○○○은 성폭력 피해로 상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기관: (직인) 전화번호: 소재지: 20 년 월 일				
발급 용도	☐ 의료비 신청		☐ 무료법률지원 신청	
	☐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 민·형사상 증거서류 제출			
	☐ 기타(제출기관: 용도:)			
발급 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신고증번호		신고일자
	☐ 긴급전화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신고접수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운영 또는 위탁기관	☐ (경기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내사항] ※ 본 상담사실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합니다.(발급일은 기산일에 포함하지 않음) ※ 본 발급기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1. 스톱킹·데이트폭력 바로 알기

2. 피해자 지원 길잡이

부록1. 유관기관

부록2. 활용사례

부록3. 스톱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서식4. 지원 안내 및 동의서

■ 지원 안내

(1) 상담 지원

- 초기 상담 및 위기 상담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2) 수사 및 법률 지원

- 담당 상담사가 피해자의 정서지지 및 조력을 위해 기관 방문에 동행합니다.
- 피해지원 법률상담과 민·형사 소송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합니다.

(3) 의료 지원

- 의료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등을 지원합니다.
- 긴급·위기 상담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및 가족에게 긴급개입상담 및 교육과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 긴급개입상담 지원 대상은 피해자만 해당됩니다.

(4) 주거 지원

- 가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5) 전문상담 지원

- 긴급·위기 상담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및 가족에게 긴급개입상담 및 교육과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6) 기타 지원 및 연계

- 피해 상황에 따라 피해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으로 연계합니다.

■ 자료의 보안 유지

- 지원 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철저한 보안 하에 보관 및 관리됩니다.
- 수집된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감독 하에 진행합니다.

안내 사항을 모두 이해하셨으며,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피해자명

피해자와의 관계

성명

(인)

기관명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내역	성명(닉네임), 성별, 나이, 주소, 이메일, 연락처, 내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사항, 피해 사실 및 정황, 폭력 피해 증거자료 등
수집 및 이용 목적	피해 사실 파악, 피해 지원 및 연계, 사례 연구, 통계 자료 작성, 지원 결과 회신,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지 재학 및 재직 확인 등
이용 및 보유 기간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 3년,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10년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피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수사 지원	성명, 성별, 나이, 피해 사실 및 정황, 폭력 피해 증거자료 등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스토킹·디지털성폭력 피해물 삭제요청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이미지 등
법률지원단, 법률 자문 변호사	법률 및 수사 지원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피해 사실 및 정황 등
기타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전문 심리 상담 및 피해 지원 등	성명(닉네임), 성별, 나이, 주소, 이메일, 연락처, 피해 사실 및 정황 등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피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피해자명

피해자와의 관계

성명

(인)

기관명

서식6. 연계 의뢰서

연계의뢰기관	기관명					
	담당자 및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계접수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메일					
의뢰내용	피해자성명		성별		나이(만) /학년	
	주소					
	연락처					
	메일					
	피해유형 및 내용					

위 내담자는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로
귀 기관에 연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2

서비스 지원¹²⁾

서식1. 법률상담 신청서

상담번호	상담일시		상담방법		☐ 전화상담 ☐ 면접상담	
신청자	성명	성별	☐ 남 ☐ 여		연령	만()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이메일 :		
신청경위	☐ 공동대응팀 권유 ☐ 홍보물 ☐ 인터넷 ☐ 홍보물 ☐ 주변권유 ☐ 타기관 의뢰 ☐ 기타					
대상 자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결혼이주여성 ☐ 독거노인 ☐ 독립유공자후손 ☐ 범죄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타					
상담대상	☐ 본인 ☐ 가족 ☐ 지인 ☐ 기타					
문제유형	☐ 민사	☐ 근로관계 ☐ 대여금 ☐ 손해배상 ☐ 임대차 ☐ 화생·파산 ☐ 기타				
		☐ 협의 중 ☐ 소송 중 ☐ 판결확정 ☐ 기타				
	☐ 가사	☐ 가족관계 ☐ 부양료 ☐ 유언·상속 ☐ 이혼 ☐ 자녀친권 ☐ 기타				
		☐ 협의 중 ☐ 소송 중 ☐ 판결확정 ☐ 기타				
	☐ 형사	☐ 가정폭력 ☐ 성폭력 ☐ 학교폭력 ☐ 기타				
		☐ 피의자/피고인 ☐ 피해자 ☐ 기타				
		☐ 수사 중(경찰/검찰) ☐ 공판 중 ☐ 판결확정 ☐ 기타				
	☐ 행정	☐ 건축물 ☐ 귀화, 체류, 출입국 등 ☐ 기초수급 ☐ 요양급여 ☐ 기타				
☐ 행정심판 중 ☐ 행정소송 중 ☐ 심판/판결 확정 ☐ 기타						
☐ 기타	☐ 개인정보보호법 ☐ 인권침해 ☐ 기타					
상담내용	• 법률상담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법률홍탁터)가 해 드리고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무료입니다. • 법률상담은 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담 이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해 드리지 않습니다. • 불법·탈법행위의 수단이나 목적, 근거 없는 비방, 욕설 등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신청자는 위 기재 법률상담신청과 관련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가 의뢰자로부터 취득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법률상담결과 등의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등에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하며,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기 관 명					

12) 여성가족부.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식 또는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서식' 참고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양식임. 스톱킹 피해자 별도 양식은 24년 예정

서식3. (가정폭력)피해자 진료지원 요청서

발급번호	20 -
발급일	20 . . .

()의료원장 귀하

(가정폭력)피해자 진료지원 요청서

치료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와의관계 : ☐ 본인 ☐ 동반아동

진료지원사유 :

상기인은 가정폭력피해자(또는 동반아동)로서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귀 의료원에 진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확 인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소 재 지 :

(상담소)장

※ 유의사항

1. 본 요청서는 진료지원이 필요한 때마다 작성하여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동일인이 수 회에 걸쳐 동일 의료원을 방문하는 경우라도 매 번 작성)
2. “발급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기관별로 발급대장 관리)
3. “진료지원사유”는 치료가 필요한 이유,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형편 등을 간단하게 작성
4. “확인자”전화번호와 소재지는 상담소 또는 시설의 것을 기재

서식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신청서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명	○○○○프로그램		
사 업 내 용	20 년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약술할 것 예시 : ① 개별심리상담, ② 집단상담, ...		
사업소요경비	총 원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예산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보호시설(상담소) 시설장 ○○○ ○○시·군·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 년 사업운영 실적자료 1부 3. 기타 첨부서류 부 끝.			

서식5.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지정 신청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시설 개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입소정원			
시설 설비				
직원	총 명 (시설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평면도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1. 스톱킹·데이트폭력 바로 알기

2. 피해자 지원 길잡이

부록1. 유관기관

부록2. 활용사례

부록3. 스톱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서식6.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약정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2. 지원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3. 약정내용			
거주가족			
주거지원 기간			
입주 부담금	금 원 (₩)		
운영기관 의무	- 자립상담원 1인 배치 - 관리비 수납 및 주택 관리·점검 - 의료비,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지원 요건 해당 시) - 입주자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자활 지원		
입주자 의무	- 주택관리 철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납부 - 주거지원사업 지침 및 약정서상 제반 준수사항 이행		
○○○○○시설장과 입주자 ○○○는 위와 같이 주거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인 ○○○○○시설장 ○○○ 인			

서식7. (긴급)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확인서

(긴급)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확인서

- ① 긴급 숙박지원 ② 긴급 식사 및 다과지원 ③ 긴급 교통비지원 ④ 긴급 의료지원
 ⑤ 기타 지원 ⑥ 긴급 의복지원 ⑦ 긴급 돌봄지원
 ⑧ 기타 (직접 기록 :)

- 일시 :

- 지원 세부 내용 :

_____는 ()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서비스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보호자)

(인/서명)

담당자(확인자)

(인/서명)

기 관 명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부록 3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

1.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톱킹처벌법)
2.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톱킹방지법)
3. 경기도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4. 경기도 여성폭력 ·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톱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후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③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7. 11.>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 ① 검사는 스톱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7. 11.>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톱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톱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1. 스톱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 2. 스톱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톱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7. 11.〉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 ① 스톱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 2. 스톱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톱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7. 11.〉

제12조(항고)

- ① 검사, 스톱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톱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톱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톱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변경에 관한 업무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4. 스톱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 ② 누구든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23. 7. 11.]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 ①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삭제 <2023. 7. 11.>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톱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 ② 법원은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톱킹 행동의 진단·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7. 11.>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목개정 2023. 7. 11.]

제21조 삭제 <2023. 7. 11.>

부칙

부칙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2,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7조의4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응급조치의 취소·변경 시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톱킹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잠정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잠정조치의 취소·변경·추가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또는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스톱킹행위 또는 스톱킹범죄의 피해자등과 스톱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톱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톱킹방지법)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톱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톱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톱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톱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스톱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톱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톱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톱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톱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톱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① 피해자 또는 스톱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톱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톱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취학 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스톱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2.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 5.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 6.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7.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 8. 스톱킹의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9. 스톱킹과 스톱킹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10.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실시)

- ①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 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톱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톱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톱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칙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8]

(전부개정) 2023-07-18 조례 제 76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톱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스톱킹행위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3.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톱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톱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스토킹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스톱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톱킹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톱킹 등의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톱킹 등의 근절을 위한 경기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톱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톱킹 등의 예방과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스톱킹 등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사업)

- ① 도지사는 스톱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톱킹 등의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등의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등의 법률 지원사업
 5.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 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8.10]

(제정) 2021-08-10 조례 제 71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함께 여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조기에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여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여성폭력·가정폭력의 재발 우려 위험에 놓여 있어 긴급임시조치를 요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이하 “공동대응체계”라 한다)”란 경기도와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통합 사례관리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②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제4조(지원대상)

- ① 이 조례에 따른 공동대응체계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범죄피해 신고번호(112) 등 유관기관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대응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공동대응체계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시스템 구축
2.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 여성폭력·가정폭력 통합사례 관리
5. 여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임 및 위탁)

- ①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민간·공공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장·군수,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여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 ① 공동대응체계에서 여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동대응체계에서 여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3). 「데이트(교제)폭력·스토킹 범죄 피해 대응 안내」.
- 경기도 여성가족재단(2023).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 경기도 여성가족재단(2023). 「경기도 스톱·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여성정책과(2022).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 경찰청(2020 ~ 2022). 「경찰범죄통계」.
- 경찰청(202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 교육부·(사)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2020).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보건복지부(2000). 「가정폭력피해자 사례관리 매뉴얼」.
- 보건복지부(2021). 「통합사례 실천가이드」.
-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2012). 「성폭력 피해 장애인 지원자 매뉴얼-장애와 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요」.
- 서울시 여성정책과(2018). 「F언니의 두 번째 상담실-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의전화(2018).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여성가족위원회(2021).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 여성정책연구원(2021).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2014).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안내서」.
- 중앙자살예방센터(2012). 「자살예방교육 매뉴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8).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매뉴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폭력피해 이주여성 사례지원 매뉴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성매매 피해자 지원 과정 매뉴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종사자 보수교육 안내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해설서」.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경기도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발 행 인 김혜순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 소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3층

홈페이지 <https://gwff.kr/031cut/>

등록번호 경기도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023-001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는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 지원 및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경기도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있으며 경기도 스톡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허가 없이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경기도 스톡·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